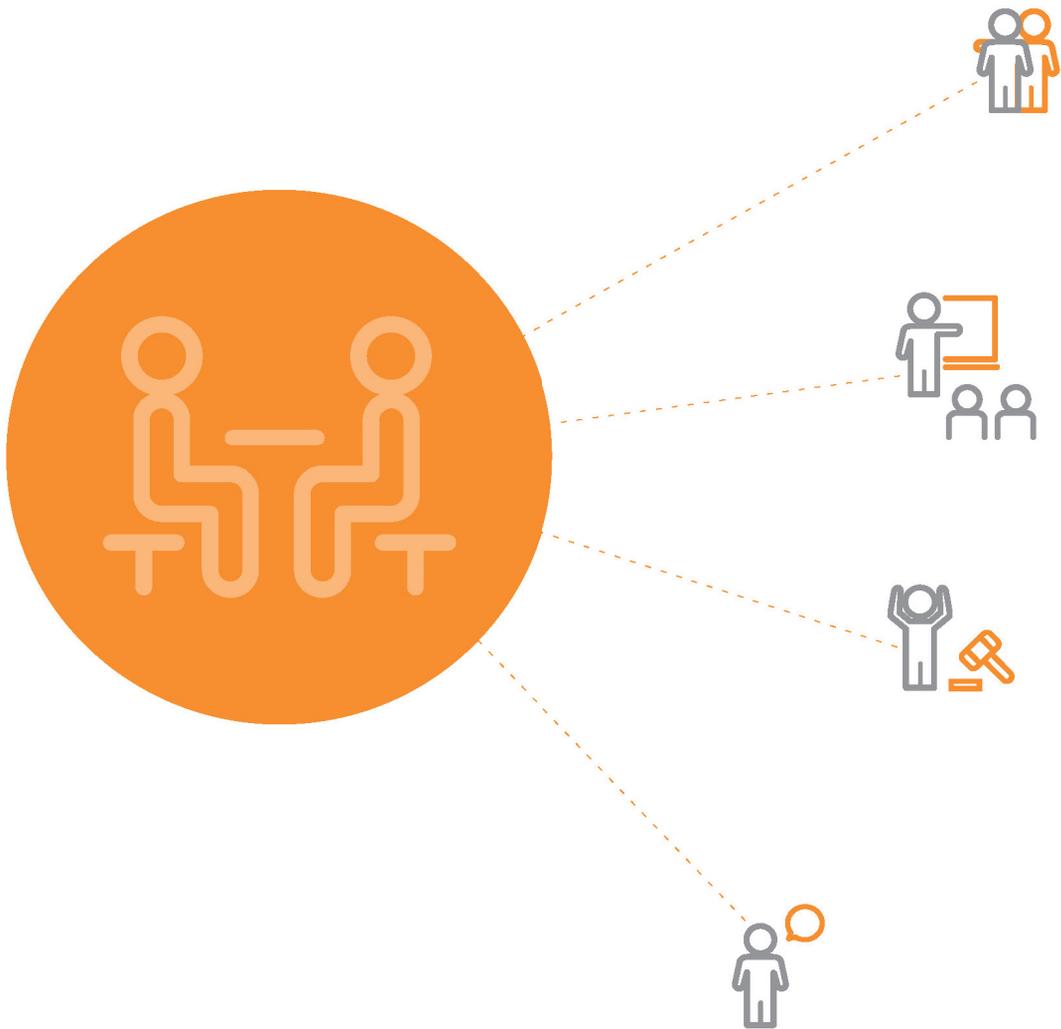


청소년 성매매문제, 같이 얘기 좀 해 봅시다!

대상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교육인가? 처벌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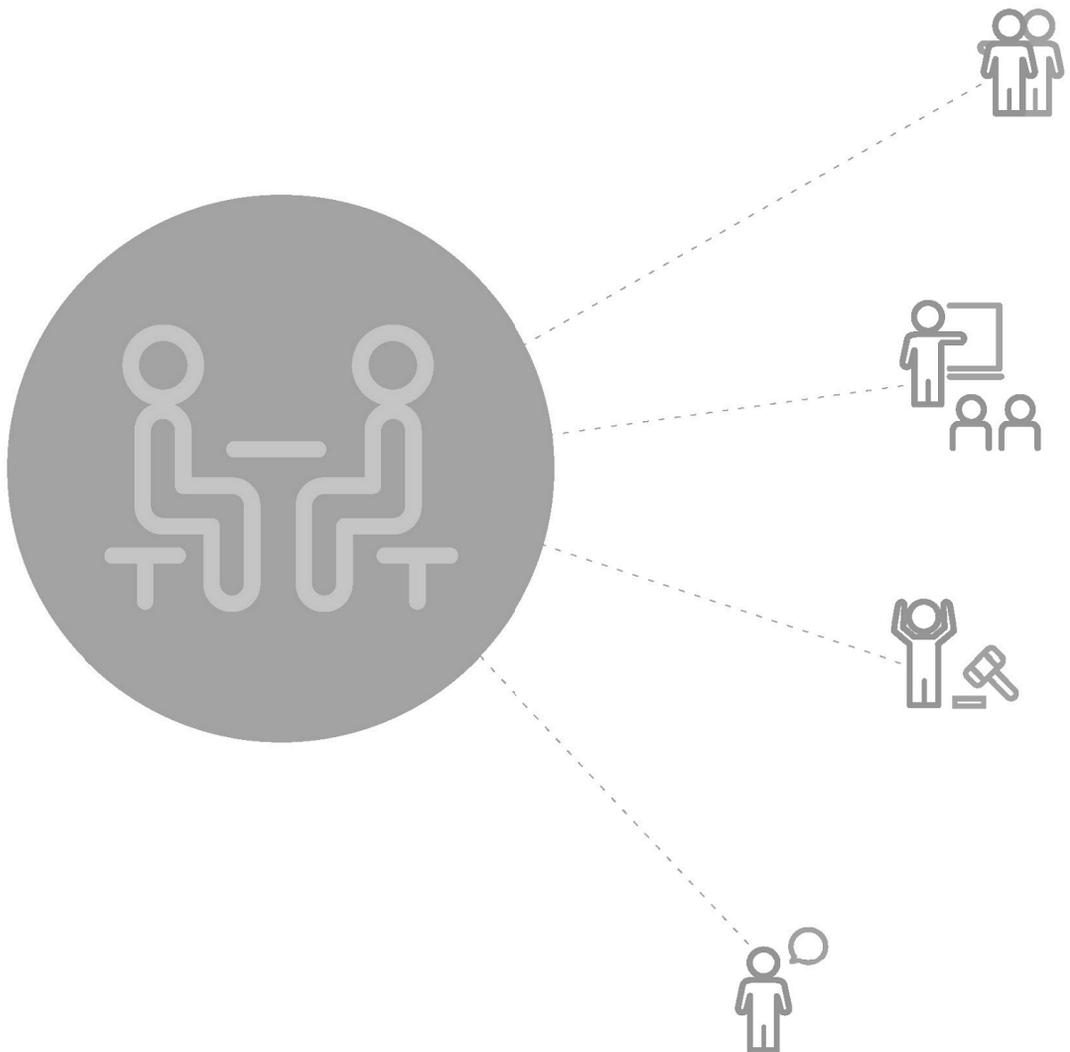


2015. 10. 19 (월) | 14:00 ~ 17:00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2층 트리스타 대회의실

청소년 성매매문제, 같이 얘기 좀 해 봅시다!

대상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교육인가? 처벌인가?



2015. 10. 19 (월) | 14:00~17:00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2층 트리스타 대회의실



C O N T E N T S

006	인사말	장만혜	십대여성인권센터 운영위원장
008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010		서순성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장
	발제		
013	발제 1	사례로 본 아청법상 대상청소년의 문제점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043	발제 2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의 위헌성	
045		-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를 중심으로	
		강정은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사단법인 두루
062		- 재판청구권, 평등권,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에 대하여	
		김병희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법률사무소 소도
073	지정 토론		
075	토론 1	문선주	인천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079	토론 2	오정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084	토론 3	김학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2팀장 경감
087	토론 4	조주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094	토론 5	김진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외국변호사
099	토론 6	김란희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푸른꿈터 소장
105	십대여성인권센터 소개		
108	십대여성인권센터 운영위원, 전문위원, 지원단 소개		

청소년 성매매 문제, 같이 얘기 좀 해 봅시다!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교육인가? 처벌인가?**

PROGRAM



사회 : 박숙란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운영위원, 법률지원단)

14:00~14:15 **인사말** 장민혜 (십대여성인권센터 운영위원장)
단체소개 권주리 (십대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14:15~15:00

발제

좌장 : 서순성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장, 법무법인 (유)원)

발제 1. 사례로 본 아청법상 대상청소년의 문제점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발제 2.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의 위헌성

-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를 중심으로
강정은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사단법인 두루)
- 재판청구권, 평등권,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에 대하여
김병희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법률사무소 소도)

15:00~15:15

휴식

15:15~16:30

지정 토론

- 토론 1. 문선주 (인천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 토론 2. 오정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토론 3. 김학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2팀장 경감)
- 토론 4.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토론 5. 김진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외국변호사)
- 토론 6. 김란희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푸른꿈터 소장)

16:30~17:0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인사말

반갑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운영위원장 장민혜입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각계의 전문가분들,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현장활동가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관심 갖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십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피해 지원과 청소년/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과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사이버포래상담원 양성과 지속교육, 청소년/인터넷성매매와 관련한 문제제기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을 하며 우리 사회에서 십대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성매매에 유입되는 청소년들에게 다른 미래를 만날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십대 청소년들은 자신이 처한 위기상황에서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을 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성매매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런 청소년들을 비난하고 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지 분노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실을 만들어 놓은 것 역시 우리 사회의 그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다른 선택이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은 그저 허공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십대 청소년들에게 다른 미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이토록 어려워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과연 우리 사회의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매일 질문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질문 하나를 내어 놓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과연, 교육인지 처벌인지 묻고자 합니다.

장민혜 십대여성인권센터 운영위원장

지금의 현실은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고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가 당연한 일상인 듯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성역도 없는 인터넷 현실 속에서 성매매는 더욱 일상처럼 보입니다.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은 무엇보다 접근이 쉬운 인터넷 환경 속에서 출구를 찾아 헤매며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당연한 일상처럼 보이는 성매매로 들어오게 됩니다.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은 약자의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약점을 악용한 성매매수자들에게 청소년들은 쉬운 먹잇감이 되고 청소년들은 다양한 범죄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지만 자신이 피해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이렇게 성매매에 유입된 십대 청소년들을 지원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 적용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성매매 피해자로서 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법률의 적용 현실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로 인식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단체와 활동가들은 이 법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온전한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은 지원 단체와 법으로 표현되는 우리 사회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달아나고 숨으려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질문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교육인가? 처벌인가?”의 이유입니다.

이 법률의 한계에 대해 질문을 품고 1년 동안 수많은 고민과 씨름하고 여러 의견들의 차이를 좁히고 정리하며 귀한 시간을 내어 헌신해 주신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앞으로도 새로운 질문이 차오를 때 또 다시 새롭게 묻고 여러분과 함께 대답하는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이 과정에 기꺼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분들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사말

저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성인 성매매피해지원 기관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당시 성매매에 관해서는 성매매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인신매매 됐다 하더라도 '윤락녀'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피해는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벌을 받고나서도 윤락녀로 낙인찍혀 더욱 심한 냉대와 차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업주는 물론 성매수자들 또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게 성을 매매하였습니다. 뭔가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의 대상이 된 여성들은 죽어야 비로소 피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현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이 지난 지금, 물론 여전히 성매매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성인 성매매피해지원체계는 국가지원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고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의식은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성매수자들도 처벌받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고, 업주들의 횡포는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성매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제 성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기관도 이 움직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인 성매매피해지원체계가 어느 정도 공고화 되어 있고,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의식이 확고하다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에 대해 별다른 어려움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예측이었습니다. 성인 성매매피해지원을 하면서 솔한 피해를 접했지만,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는 저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 넘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했지만 바로 그것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착취와 폭력은 상대가 약자일 때 훨씬 잔인해지고 노골화되지만 죄의식은 훨씬 덜합니다. 아동청소년은 연령에 있어서나 사회적, 경제적, 성적으로 모두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들을 보호해야 할 법조차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법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더구나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지원체계조차 거의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 경험은 일생을 거쳐 장기간 재난에 버금가는 엄청난 악영향을 냅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일상화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들의 초기 연령을 더욱 낮추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성매매에 이용하려고 하는 성인 성매수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시켜서는 안됩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성매매 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면서 현행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3년 동안 아청법 연구모임에 참여하여 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센터의 법률지원단과 논의하여 아청법 헌법소원 TFT를 구성하여 1년간 대상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토론회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십대여성인권센터가 문을 열고 처음 개최하는 토론회입니다. 저는 대표로써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열다섯 분의 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 중 헌법소원 TFT의 멤버는 정정훈, 박숙란, 김차연, 천지선, 김병희, 강정은, 김수연, 최석봉, 서경원 변호사님이십니다. 이 분들은 바쁘고 힘든 일정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 토론회 준비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 박숙란, 김차연, 천지선, 김병희 변호사님은 초기 TFT를 구성하고 걱정이 많은 저를 격려하시며 이 큰 일을 벌일 수 있도록 힘이 돼 주셨습니다. 지면을 통해 함께 해주신 모든 변호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회를 위해 기꺼이 좌장을 맡아주신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서순성 법률지원단장님, 발제문을 정리하셔서 대표 발제를 맡아주신 강정은, 김병희 변호사님, 토론자로 나와 주신 인천지방법원 소년부 문선주 판사님,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오정희 부부장검사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2팀 김학운 팀장님, 국회입법조사처 조주은 입법조사관님,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김진 외국변호사님, 멀리서 달려와 주신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푸른꿈터 김란희 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자랑스러운 우리 센터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들과 사또 상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게 마련된 자리이고 각계 각층의 전문가분들이 귀한 시간 내시어 참석해 주신만큼 이 토론회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는 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서순성 변호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각계 전문가들과 본 토론회의 주제와 관련하여 1년여를 연구해 오신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토론회의 주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음지에 있는 문제인 청소년 성매매 문제이며, 이를 법적 시각지대로 내모는데 일조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쟁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회적 양극화이며, 사회적 양극화의 부작용으로 가정해체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해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가출, 청소년 범죄, 청소년 인권 착취, 십대여성의 경우에는 청소년성매매에 노출된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는 가정폭력, 성폭력과 관련성이 매우 높으며, 가출로 인한 빈곤과 생계비 마련이 성매매 유입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률 중 형사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법률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잘 나와 있듯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교하게 가다듬어 져야 하며, 법적용도 이런 입법취지에 맞게 정교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순성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장

그러나 현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 적용 현실은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성매매 피해자임에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됨으로 인해 처벌로 인식되고, 이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의료적·정신적·경제적 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청소년들이 이런 법적 보호를 기피하게 만들어 지원서비스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은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는데 있어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지난 1년간 학계 연구자들, 현장실무가들과 TFT를 만들어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물을 오늘 강정은 변호사님과 김병희 변호사님이 발제를 할 것입니다. 요즘 변호사들의 현실이 녹록치 않음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연구를 수행하신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 한분 한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준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법원, 검찰, 경찰, 학계, 현장실무가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의 허심탄회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모여 보다 정교한 입법 및 법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청소년 성매매문제에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성매매 문제, 같이 얘기 좀 해 봅시다!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교육인가? 처벌인가?

발제 1

사례로 본
아청법상 대상청소년의
문제점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1. 들어가며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성매매를 폭력과 착취로 규정하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로 보아 성매매에 반대한다. 특히 성장기에 있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심리적으로 변화가 심하여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고의 논의조차 필요치 않는 성착취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최근 인터넷과 휴대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현실세계 속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성매매산업이 가상 현실세계에도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성매매의 시간과 공간, 연령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들며 무한 확장되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성매매에 이용되는 아이들의 연령은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고, 사이버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알선하는 범죄집단들은 아동·청소년들을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고 관리하면서 조건만남 형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더욱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다.¹⁾ 그러나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개인형 성매매로 인식되고 있어²⁾ 아동·청소년 입에도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

1) 수원지검,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수원북문파’ 조직원 등 48명 기소, young86@yna.co.kr 연합뉴스, 2015/09/09.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10대 가출 청소년들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역대급 ‘화대’를 챙긴 폭력 조직원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09/0200000000AKR20150909104600061.HTML?input=1195m>

2)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문제집단, 방탕함 등으로 부정적,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어 노출된 위험도에 비하여 보호대책 마련 및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경험한 경우에는 그 연령대에 당연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로 간주해야 한다.” 이유진 외(201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Ⅱ: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3-R10, 3쪽.

현직 경찰인 부정주는 이렇게 말한다. “혹자들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 대부분 스스로 하는 자발적 성매매임을 강조하며 처벌을 주장하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않는 경우이다. 성매매가 주로 일어나는 채팅사이트에 아동·청소년으로 추정될 수 있는 여성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자발적 성매매를 하였다고 불리는 그들이 하듯 “OO역 2번 출구 1시간 15만원…” 등의 채팅방을 개설해 보라! 이후 펼쳐지는 상황에 여러분은 분명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무수한 남성들이 위와 같은 방을 개설한 누군가와 조금이라도 먼저 대화하기 위해 쪽지를 보내거나 대화신청을 위해 경쟁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성매매의 고의를 가지고 아동·청소년들이 먼저 채팅방을 만들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대화를 거부하여도 성구매를 마 음먹은 남성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성매매의 조건을 흥정해 올 것이다. 채팅방을 만든 사람

련 법률(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여 이러한 피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2015년 3월에 발생한 성매매에 이용되고 살해된 14세 소녀 사건의 경우에도 이 소녀를 알선한 알선 범죄자 3인은 인터넷사이트에 가출소녀들을 대상으로 구인광고를 내고 면접을 본 후 전국을 돌며 아이들을 이동시키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그들은 모텔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죽은 14세 소녀를 사랑한다며 꼬여 동거를 하고 핸드폰 ‘즐톡’ 어플을 통해 성구매자와 조건을 합의한 후 차량으로 소녀를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대금을 갈취하였음에도 법정에서는 살해된 소녀가 스스로 성매매를 하였고 자신들은 단지 정보를 제공했을 뿐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을 다른 경우에서 다시 살펴보면, 소녀가 살해되지 않고 경찰에 붙잡혔다면 현행법상 소녀는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된다. 만 13세 이상의 소녀가 ‘즐톡’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였다면 당연히 개인형 1:1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성매매행위자로 처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이므로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알선업자들은 아동·청소년들의 사이버상 조건만남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이러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미성년자들을 모집하여 마치 개인형 성매매처럼 위장하여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조건 만남 성매매를 하였을 경우 보호처분되기 때문에 본인이 처벌받는다 생각하여 현행법에 호소하기보다는 알선업자들의 지배를 보호로 생각하여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죽어야 비로소 피해자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법에 호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과 대화가 안되면 마치 큰 낭패를 보는 것처럼 분주히 범죄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성구매자들은 아동·청소년에게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의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단지 판단력이 미숙한 당신의 자녀나 동생이 먼저 그러한 채팅방을 만들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합리화시키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채팅방을 계속 만들도록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중용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주(2010),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의 수사과정과 성구매자 처벌의 현실”, 『여성과 인권』 3, 32쪽.

2. 청소년 성매매와 사이버상의 성매매 알선, 유인, 권유, 광고 실태

2000년대부터 급속하게 한국인들 사이에서 인터넷이 사용되었다. 인터넷을 사용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며 모르기 때문에 속마음을 나누고 서로에 대한 구속없이 하루밤을 함께 즐기는 상황이 신선하고 새로운 문화로 젊은 사람들의 문화로 각광받게 되면서 각종 포탈 사이트들에는 만남사이트와 채팅사이트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문화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한국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광대한 성매매산업으로 인해 바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우선 성매매 알선업소들이 업소 홍보를 위해 인터넷상에 뛰어들었다. 업소 홍보의 형태는 홈페이지를 제작해 노골적으로 업소를 홍보하는 방식에서부터 ‘밤문화 후기사이트’를 만들어 성매매업소를 다녀오고 난 후 여기서 있었던 일들을 사이트에서 자랑처럼 공유하고, 어떤 업소의 누가 어떤 서비스를 했고, 싸게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일반인들에게 성매매서비스 받기를 부추겼다. 이러한 후기 형태의 사이트 운영은 대표적인 포탈사이트와 스포츠신문사 사이트를 활용함으로써 더욱 활성화되었으며,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채팅사이트, 애인대행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성매매 알선업소 홍보를 확대해갔다. 인터넷 확산과 더불어 성매매알선영업 홍보의 무한확장은 계속되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했다. 더 나아가 무선통신기 사용 확대는 성매매 알선정보를 담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을 익명의 대상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여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알선사이트에 접속하게 유도하는 방식이 개발되었고, 현재 스마트폰의 채팅어플들은 성매매알선의 주요한 알선형태로 대두되었다. 인터넷 확산과 스마트폰 사용의 확대는 성매매시장을 무한 확장시키고 있으며, 연령의 구별을 무의미하게 하면서 성인과 아동·청소년과의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영업을 확대시키면서 성매매유입 연령을 계속 낮추고 있다.

1) 청소년 성매매

가출청소년이 20만 명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가출한 여자청소년 7~10명 중에 1명 꼴로 성매매를 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연구자료(성운숙, “위기청소년과 인터넷성매매-그 현실을 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개원 1주년 기념토론회, 2010)에서 알 수 있듯이, 위기상황에 처한 여자 청소년이 생존의 일환으로 성매매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사실 이 결과 또한 매우 한정적이며 실제로는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위기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입되고 있다. 이들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초기 경로는 90% 이상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실제로 길거리에 내몰린 위기청소년들이 솔하게 이용하는 공간은 PC방, 찜질방, 친구집 등 다양하지만 어떤 곳에서든지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이들에게 떼어놓을 수 없는 가장 익숙한 소통수단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세계 안에서 위기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와 카페들 중에는 낯선 상대와 실시간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특히 문자친구·가출팸·숙식제공·아르바이트 등을 구하는 목적형 카페에 가입하면 성구매자·알선자들의 수많은 쪽지나 채팅, 성매매 광고글에 반드시 노출된다. 이들은 성매매를 가볍게 포장하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더 많은 위기청소년들을 성매매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인터넷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조금 더 진화되고 전문적인 유흥업소로 손쉽게 유입되며, 그 속에서 극심한 성매매 피해를 겪게 된다.

2) 만남대행 사이트



성매매알선업주들은 소위 ‘만남대행 사이트’를 개설하여 마치 성매매가 합법적인 영업인 양 버젓이 업주의 얼굴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까지 기재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 아래의 만남대행 사이트는 전국에 지부를 두고 운영하며 주요 업무는 출장대행, 조건만남, SM 특별서비스 등 여러 가지 많은 서비스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사이트에서는 지역,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특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횡수, 수위 무제한 부담없는 가격에 즐길 수 있으며, 섹스는 인간의 제2의 본능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최소한 누려야 할 본능마저 못누리고 있다면 오늘 하루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가 왕이 되어 이 공간을 지배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인터넷 상에 여성들의 얼굴과 이름을 배열해 놓은 페이지가 10페이지를 넘어가고 있으며, 숏타임·롱타임이라 하여 성매매 알선 금액과 카카오톡과 전화를 사용한 예약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인터넷 상으로 들어온 성매매 알선 업소는 지역과 공간의 한계,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성매매 산업을 무한확장 시키고 있다.



예약방법 RESERVATION METHOD

예약 방법

1:1 상담신청 > 카카오톡 SV > 010-4- > 예약완료 ✓

숏타임 Shot Time

3시간 15만원 예약비 10만원
나머지 금액은 아가씨만나서 직접 드리면됩니다
술장비, 모텔비, 포탈 / 횡수, 수위 상관없음(무한서비스)

롱타임 Long Time

8시간 25만원 예약비 15만원
나머지 금액은 아가씨만나서 직접 드리면됩니다
술장비, 모텔비, 포탈 / 횡수, 수위 상관없음(무한서비스)
2인+3인 약간의 활인이 있습니다. 별도로 문의해주세요.

예약절차

카카오톡

1. 맘에 드시는 아가씨 선택 및 출장여부확인.
2. 상담원아함 스케줄 찾기 [이름(가명가능)/만남장소/예약시간]
3. 시스템 지정된 예약금 지불[잔심(예약보장)]
4. 예약완료 [지정된 시간내 도착]

각종서비스

*Vp 회원님을 출장전 꼭 예약해주세요 (대리/비자임/택시/비자임)

010- [redacted] -4- [redacted]

출장아가씨가 특정 강제양상 남치 등 비도대행위가 발생했을경우, 법적조치를 취합니다.
모든 만남 실례시 잔액환불해 드립니다!

회사소개 공지사항 영웅통보라가기 예약방법 만남후기 오시는길

만남후기 MEET THE FEELING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242	사인심 맡고대로 아주 곳입니다 곳 실감남 ...	초코파에	2233
241	실감남 고마워요 아령 씨 추천해 주셔서 ...	혁혁 tr	1962
240	이러곳 진짜 잇네 사인 대박	동동주	2185
239	아가씨들 다 느끼는거 아님? * * *	불명불명	3430
238	오늘 사인 형인데요 신중하나는 좋네요	얼문당	2947
237	자연미인을 만났다, 너무 이뻐요~	프로	3223
236	큐틴한~그녀~~미션씨~	환상	2168
235	한대로 곳~입니다	빅리곳	1870
234	처음엔 망설였는데 ~	봄명씨	2342
233	미팅!!!! ㅋㅋ	달빛보	2819
232	다인계 또 보고싶네요	다인사랑	2648
231	역시~ 사인 최고네요	당당콩	1720
230	지나씨 최고!!	학하네	3109
229	대박~!	평겨루	2685
228	참 오랜만에	기봉어	2292

1 2 3 4 5 6 7 >

게시물 합계: 242건

검색 검색 and or

3) 포탈 사이트

노래방도우미알바되는데업나어 ㅍㅍ 18살임 35

비공개 | 질문 10건 | 질문마감률 25% | 2014.01.10 10:55 | Mobile

1

답변 4 | 조회 103

모바일질문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질문하자 **모바일 지식백**으로 질문해보세요. [자세히보기](#)

저가친구랑해서같이구하는건데 되는곳있음 쪽지주세요
2차안나가고요

의견 5 | **나도 궁금해요** 신고

7 2014-02-21 00:42:55 신고

카톡!! [redacted] 연락주세요 * *

sa 2014-02-17 01:52:26 신고

O1o 26. [redacted] 문자주세요

ql 2014-02-03 05:39:31 신고

[질문확인]대견 속식제공 가능합니다~
친구분과 같이 일하셔두 상관없구요 *
자세한건 톡톡 oic [redacted] 주세요 *

대표적인 포탈사이트를 통해 18세 청소년이 노래방도우미 알바를 구하는 화면이다. 업주들은 카톡, 틱톡, 전화번호를 남겨 가상현실 밖에서 만나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한다. 포탈사이트는 성매매 알선업소 구인, 구직의 중요한 매개체이다.



4) 업소 홍보 웹전단

순수

바디비브라-원제 원화프
수원 면리차드 후너프 임정환 "순수" 알라 입니다!!

업소는 발은데 여타를 기억할지 많이 모면이 되신다면
강남에서 일할거로 "순수" "순수" 에취 일해보세요!!
순수분들도 빨리 적용 하실수 있을만한 가족적인 분위기가
가꾸어져 있는 저희 "순수"을 선택하신다면
망설였던 시간까지 아까우실 겁니다!
의욕있고 프로다운 마음가짐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성공을 꼭 이루워 드리겠습니다.
절 믿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페이(수입)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100% 당일 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루 순수 페이가 최하 30만원정도 입니다(최고수입보장)
(개인차는 있지만 확실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부분 꼭 상담주세요~)
(방은 평균 하루에 3T~5T 정도 보시면 될거구요
(당연히 더 보실수도 있습니다..^^)

일

일하시는곳은 강남 서초 교대 를 가장 많이 들어가구요,
다음 빽배동 양재동 등입니다.
저녁 7시 40분 부터 일 시작 해서, 아침 6시에 마감합니다.
(물론 더 늦게 끝날때도 많아요!)
출퇴근은 완전 자유 입니다~^^
편한시간에 와서 일하시고, 편한시간에 퇴근 하시면 되요.
하지만 노력하는사람이 뭇든 잘되듯이 기왕에 버실거라면
일찍나올수록 유리하죠..^^
주6일 영업...(일요일 휴무(토요일대백))

본 광고는 영아후 삭제되오니 미리 저장해 주세요.

서울노래방알바 W chang TALK

010 [redacted]

- 1. 하는일은?**
친구들과 재밌게 논다는 생각으로 분위기만 살짝 영~시키면 OK~
강 손님과 같이 노래부르고 간단히 예뻐올 하면 OK~
순 No!! 스키십 No!! 초이스 No!! 왁전 7~10년 노래방
처음일하는 초보분도 1시간이면 적응 끝!!
- 2. 자격은?**
20살 이상(95년생부터) 여자라면 무조건 OK~^^
영글, 오오, 싸이즈 하나도 안봐요~ 부당 강제라고 봐주세요.
딱하나 보는건 나이!! 미성년자는 Never!!!
- 3. 페이는?**
시간당 30,000 ~ 35,000원
항공에 20만이상 + @ (개인입) 100% 당일지급
- 4. 근무지역은?**
종로,동대문,용지로,사정
- 5. 근무시간은?**
저녁 7시 ~ 새벽 6시까지 출퇴근 완전 자유!!
지망인, 대학생, 학원생 특강환영
단기알바 주말알바 가능 (인근지역에 항공만 나왔도 일가능)

알선, 소개업자들은 위와 같은 홍보전단을 만들어 각종 포탈 사이트에 뿌리고 있다. 이러한 광고형태는 과거 전봇대, 화장실 등에 ‘월수 300만원 보장, 초보자 환영, 가족같은 분위기’라며 전단을 붙이는 형태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던 형태가 사이버상으로 들어온 것이다.

5) 블로그

강남홍보도 ◆ 알바 • 면접문의 ◆ 강남홍보도

2014.04.17 09:00 http://blog.daum.net/ [redacted]

강남홍보도 ◆ 알바 • 면접문의 ◆ 강남홍보도

강남홍보도 알바 • 면접문의 김실장 → 0.1.0 [redacted] - 0.1.3.0 ★ 카톡 : qu [redacted] 초보환영, 당일지급, 출퇴근자유, 차량지원, 무료성형, 숙식지원, 풀티셔, 마이캅 24시간 부담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

강남홍보도 알바 • 면접문의 김실장 → 0.1.0 [redacted] - 0.1.3.0 ★ 카톡 : qu [redacted] 초보환영, 당일지급, 출퇴근자유, 차량지원, 무료성형, 숙식지원, 풀티셔, 마이캅 24시간 부담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

김실장

010. [redacted]

- ☞ 출근은 자유롭게 하면 됨 ~ 세탁이 늘어나 갑자기 옷이 줄어들 때 잠깐씩se 알하고 돈벌어 가져도 됨니다 ^^
- ☞ 하는일도 너무 쉬워요 ~ 친구랑 술한잔 하러 왔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있다 가시면 됨 술을 잘 못마셔도 걱정없어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
- ☞ 복장은 원하는 대로 ~ 스타일에 제한 없구요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옷입으시면 됨요 옷이 없다고 걱정 마세요 가게에도 예쁜옷이 많이 있습니다 ^^
- ☞ 출근만해도 10만원은 기본으로 ~ 하루최소 10원에서 50만원이상은 문제없어요 잠깐만 일해도 금방 돈을 벌 수 있어요 ^^
- ☞ 초보자도 대환영 입니다 어려운 일 아니니까 부담없이 걱정없이 연락주세요 ^^
- ☞ 대학생, 휴학생, 직장인, 투잡, 프리잡 모두 OK!! 24시간 아무때나 문의 주세요 ^^

각종 블로그 역시 성매매업소를 소개, 알선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6)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인터넷 상에는 수많은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들이 있다. 아래의 사이트는 ‘19금’ 표시를 하여 미성년자 접근을 금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회원 실명 인증이라 하여 미성년자가 다른 성인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접속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월수입 ‘1,500만원 이상’과 하루 ‘100만원 이상’을 보장한다고 유혹하고 있다.



7)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서 알바를 치면 수없이 많은 유희업소 알바 어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다.



8) 성매매 알선의 장이 되고 있는 각종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



레몬시티



심심채팅



마약팅



앙스



엔조이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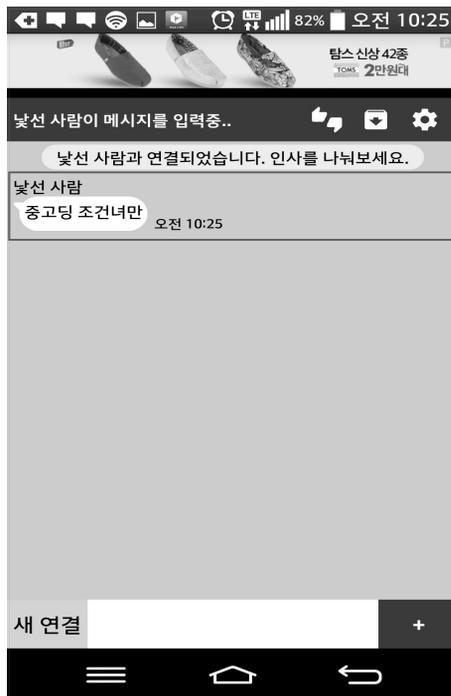


28

코코아팅



낯선 사람과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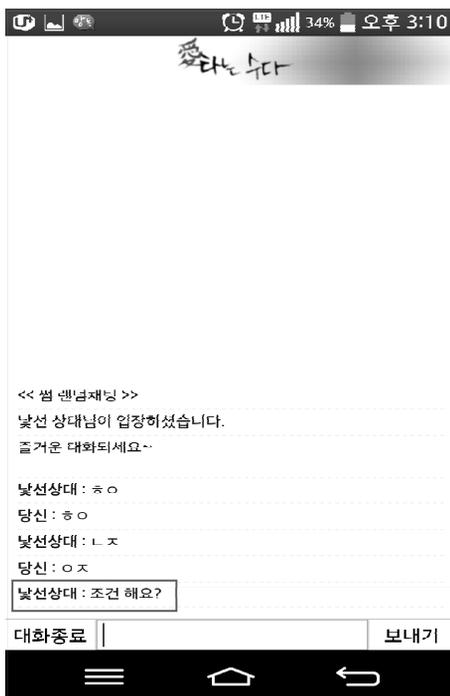
바로메이트



클럽2580



애타는 수다



네임 클로버 찾기



9) 어플리케이션에서 조건만남



사이버포래상담원이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18세 설정하고 방을 만들어 10분 동안 들어왔던 조건만남 제안 쪽지들이다.

3. 사례를 통해 본 아청법상 대상청소년의 문제점

사례 1

한○○의 새어머니 되실 분이 전화 상담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 한○○는 가출하여 혼자 성매매를 하다 가출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당하던 중 도망나와 새어머니 되실 분과 함께 XX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00경찰서에 관할권을 넘겼고 고소장을 쓰라는 답변을 들음. 00경찰서에서는 피해내용과 가해자를(남2, 여2) 신고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XX경찰서와 00경찰서 모두 한○○에게 성매매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함.

사례 2

2014년 세상을 놀라게 한 김해여고생 살해사건의 가해 여성 청소년 중 1명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 본인도 같은 남성 가해자들에게 똑같은 폭행과 협박, 성매매 강요 등을 당하다 도망하여 본인의 어머니와 경찰에 신고하려 갔으나, 경찰이 어머니 앞에서 “네가 성매매를 했다고?”하는 말을 했고, “너도 처벌받는다.” 등의 발언을 하여 이 가해 여성 청소년은 어머니 앞에서 수치스럽고 처벌이 두려워 “고소 안할거예요.”하며 경찰서를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에서 이런 사례는 쉽게 볼 수 있는데, 수사기관의 시각이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보호처분을 보호라기보다는 처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고하러 수사기관에 갔을 때 “신고하면 너도 처벌받게 된다”는 말을 듣는다면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하겠는가! 사실상 신고를 하기 위해 처벌받을 각오를 하게 함으로써 신고를 주저하게 하는 경우도 상당할 뿐 아니라, 아이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기는 쉽지 않다. 사례2의 경우는 수사기관의 이러한 시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후에 살해에 가담했던 가해 여성청소년이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신고하러 갔을 때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남성 가해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한 아이의 죽음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가해 여성청소년

역시 그 전에 똑같은 폭행과 협박, 성매매강요를 당했지만 피해자로 인식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현행법에서도 유인, 알선 강요되었다면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지되어야 함에도 청소년성매매는 자발적이라는 사회적 시각이 팽배하여 유인, 알선으로의 수사 진행 방향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 이에 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이며, 아동·청소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임을 법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사례 3

2013년 7월에는 가출팸의 일원에게 수차례 성폭력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17세의 소녀를 비행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시키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결정하는 판결이(연합뉴스 2013. 7. 7. 김수진 기자) 나옴.

사례 4

올해(2015년, 발제자 첨부) 초 제주지방법원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가출 청소년 2명과 동시에 성행위를 한 홍모씨(40)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6월 가출 청소년 A양과 B양(13·중학교 2학년생)을 꼬드겨 변태적 성관계를 갖고 차비 명목으로 1만원만 건넸다. 홍씨에게 성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가출 청소년 A·B양은 이후 소년부로 송치됐다.

the300, 지영호 기자, 2015.08.09.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80914287616563>

법정구속, 소년부 송치 등은 분명 피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아닐 것이다. 위 사례들은 성폭력, 성매매를 강요당한 17세 소녀와 변태 성행위의 대상이 된 13세 소녀들의 사례로 성인 성범죄자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례이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구속당하고 13세 소녀들이 폭행이나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청소년들과 똑같이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소녀들을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 아동·청소년들이 성인이었다 라도 이러한 판결이 나왔을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판결은 성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들을 ‘어린 윤락녀’로 보는 시각으로 더 늦기 전에 교정과

교육을 통해 갱생을 시키겠다는 재판부의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이런 판결들이 계속된다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들은 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예 포기하게 될 것이다. 아래는 미국의 사례로,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조금 길지만 모두 인용한다.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은 어떠한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비행청소년이나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본인의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오히려 철저하게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및 약취 피해자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유롭게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크게 보면 이것을 가리켜 성매매 아동·청소년 생존자 개인이 갖고 있는 개별 욕구(individual needs)를 반영한 피해자-중심적 접근(victim-centered approach) 정책이라 부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아동·청소년을 훈육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미국에서는 오히려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외부에 알려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철저히 보호해 주는 것이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는 첩경이라고 보았다. 미국에서 성매매 아동·청소년 생존자들을 위한 쉼터가 다른 일반 청소년 쉼터보다 더 자유롭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다루는 관련 실무자들에게 법적으로 성매매 유입경로 및 발달 민감성 특성 등을 의무적으로 교육받게 하여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다룰 때 절대 “작은 매춘부”로 여성 아동·청소년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는 것도 피해자 중심적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책과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들과 우리 사회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10세 미만의 어린 아동의 성매매 행위보다 10세 중후반의 여자 청소년의 성매매에 상대적으로 관련 실무자들이 더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잘못된 처우로 강력히 지적하며,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18세 미만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에게는 동일한 피해자적 지위를 부과하도록 요구한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 큰 것으로 소년보호기관 및 청소년 보호 담당자들이 10세 미만의 여자 아동(child)이 아닌 10대 중후반의 성매매 여자 청소년(adolescent)에게도 동일한 잣대의 보호 기준을 가지고 그들 모두를 온전한 성매매 착취 피해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법령을 통해 아예 청소년 매춘(juvenile prostitution)이라는 표현도 삭제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매춘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성인 여성에게 사용되는 성매매라는 표현을 아동·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바, 피해자 시각이 부각되는 다른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표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³⁾

사례 5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돈이 필요해서 졸푼을 통해 조건만남을 했습니다. 서너번 만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 만나자는 보챔에 만났습니다. 한번 만날 때 마다 20만원 씩 받았지만 제가 바빠서 돈이 급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몇 십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남자친구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든 돈을 모아서 보내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자신은 잃을게 없다면서 계속 협박하고…(생략. 사례자 만 18세)

위 사례는 성인 남성이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너도 처벌되니 신고하겠다.’ 하는 방식으로 협박하여 만남을 강요하고 스토킹한 사례이다. 이 여성 청소년은 참을 만큼 참다가 결국

3) 이유진 외(201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Ⅱ: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3-R10, 116-120쪽.

본 센터에 의뢰를 하였고, 본 센터의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쓴 고소장을 보고 가해자쪽에서 제발 고소만 하지 말아달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며 애원하였고 이에 사건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내담자의 요청으로 진행을 멈춘 사례이다. 현재 이런 사례들은 상당히 많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협박은 성매수자의 성매매 강요에 응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성매수자와의 성매매 강요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현행법의 대상청소년 개념이 있는 한 위와 같은 사례는 계속 될 것이다.

사례 6

한 동네에서 함께 친구로 지내왔던 세 아이가 있었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들 셋 중 한 아이는 기출하여 성인남성과 조건만남을 하며 거리에서 살고 있고, 두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날 세 아이가 거리에서 대학생 오빠 3명을 만났고 오빠들이 모텔에 가서 같이 놀자는 말에 꼬여 모텔에서 성폭행 당할 찰나에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그럼 경찰은 이 사건을 성폭력사건으로 처리를 했을까? 성매매사건으로 처리를 했을까? 불행히도 이 사건의 세 아이들은 모두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되었다. 세 아이 중 한 명이 이 사건 전에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위 사례는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교육대상자로 참여한 두 아이들의 진술로 밝혀진 사례이다. 성매매재유입예방 교육을 하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는데 참여한 아이들이 자신은 그런 경험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왜 대상청소년으로 경찰명단에 이름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이들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본 결과 위와 같은 상황이었다. 아이들은 성폭력 미수 피해자였지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된 것이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특성이 성폭력피해와 성매매피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대부분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는 성폭력으로부터 시작되고 여러 이유들로 인해 예를 들어, 부모에게 알려졌다는 협박으로 시작되어, 너도 처벌받으니 신고하겠

는 협박같은 이유들로 성폭력이 지속되고, 그 과정에서 용돈이나 먹을 것, 영화를 보여주는 행위 등을 통해 연인관계 같은 모양새를 만들고 이후, 수사과정에서는 연인관계다, 성매매는 했지만 성폭력은 안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가해자들은 처벌을 빠져 나간다. 수사담당자들도 한결같이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위의 사례는 국가기관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사례 7

가출한 여중생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40대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원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부천역 일대에서 가출한 여중생 B(13)양 등 10대 여자 청소년 4명에게 접근해 잠자리와 술, 담배 등을 제공하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청소년은 부모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가출한 뒤 부천역 인근에서 떠돌다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천역 일대에서 가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공짜로 주고 자신의 월세방에서 잠을 재워 줘 일명 ‘좋은 삼촌’으로 불린 것으로 검찰은 전했다. A씨는 검찰에서 “오갈 데 없는 애들을 도와준 것”이라며 “여중생의 몸을 만진 적은 있지만 성관계를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혐의 중 일부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부천역 일대에서 청소년 상담활동을 하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피해 사실을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좋은 삼촌으로 불리며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가출 청소년들의 환심을 산 뒤 단칸방으로 유인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부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조해 피해 여중생에 대한 정신적인 치유와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십대여성인권센터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호일보 15. 02. 24. 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5580>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한 단체가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하려고 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발로 소위 ‘삼촌’들의 집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폭력이 아니니 성폭력 수사팀에서는 우리 사건이 아니다 하였으며, 성매매 범죄로 신고하려 해도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으니 성매매사건이 아니라 하여 사건 접수조차 받으려 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성폭력수사전담팀과 생활질서과에서 핑퐁하며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아, 본 센터는 검찰에 기획수사를 의뢰하였다.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성폭력과 성매매 사이의 애매한 지점에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명확한 구분을 하여 사건을 다루고 있어 사실상 이와 같은 범죄를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본 센터에서도 이 사건을 신고하려 하면서 성매매사건으로 신고를 해야 할지, 성폭력 사건으로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성매매사건으로 신고할 시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었고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은 본인들이 신고하여 보호처분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가해자는 강제추행 등이 인정되어 징역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전자발찌 10년, 정보공개 5년을 받고 양쪽 다 항소하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례 8

2014년 6월경, 만 13세를 2개월 지난 한 아이가 모친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놀다가 떨어뜨려 액정이 깨졌다. 엄마에게 야단맞는 것이 두려워 아이는 가출을 결심하고 핸드폰의 친구찾기 앱을 통해 ‘가출함, 재워줄 사람’이라는 방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 성인 남성을 만났다. 또래에 비해 지능이 약간 떨어져 학교에서도 자주 왕따 경험이 있던 아이는 갈 곳이 없어 그 남성을 따라 모텔에 가서 성폭행을 당했다. 첫 성경험이었고 너무 무서웠고 혼란스러웠던 아이는 더욱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핸드폰 앱을 통해 친구를 찾았다. 그 후 십여 명에 달하는 성인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가출신고가 되어 있어 거의 1주일이 지난 후 아이를 찾았지만 아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거지꼴이 되어 있고 뭔가 이상한 아이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서울의 한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성폭력으로 신고한 후 국선변호사 입회하에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술하였다. 지능이 약간 떨어지는 만 13세 아이가 가출하였다 하지만 그 아이를 만났던 십여 명에 달하는 어떤 성인도 아이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도리어 이 아이를 성폭행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고 아이를 안심시킨 후 횡설수설하는 아이를 통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등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피해자국선변호사와 아동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사건은 잘 해결될 듯 했다. 아이는 그 일이 있고 난후 극도로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심각한 우울증상을 보였고 급기야 자살시도까지 하였다. 결국 어머니는 아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해야 했다. 그러나 잘 해결될 줄 알았던 사건은 이 사건이 성폭력사건이 아니라 성매매사건이므로 아이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며 아동센터에서 지원을 중단하여 이 아이의 심리상담을 하던 선생님이 의해 우리 센터에 연계되었다. 아동센터에서도 성폭력 아동만이 지원의 대상이기 때문이었다. 그 후 12월이 되어 사건은 하나씩 결정이 났다. 총 7명의 가해 남성이 특정되어 성폭력 범죄로 조사를 받았지만 각각의 사건이 모두 성매매사건으로 인지되었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3명의 가해자 중 1명만 아동청소년성매매로 기소되었고 나머지 2명은 대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리 되었다.

만 13세를 겨우 2개월 지냈을 뿐인 아이를 강제가 아니라 하여 성폭력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대가를 주지 않았다 하여 성매매로도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아이의 모친은 정신을 놓았다. 함께 했던 국선변호사님에게 항고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변호사님 역시 안타깝지만 자신은 성폭력피해 국선변호사이어서 성매매사건으로 결정된 이상 법적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항고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 센터의 법률지원단에게 돌아왔다. 우리 센터 법률지원단에서 이 사건을 받아 무혐의 결정된 가해자 2명에 대해 항고를 하였다.⁴⁾

4) 조진경, '길에서 보내는 편지', 십대여성인권센터 뉴스레터 7호, 2015.

아청법 상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극명한 차별이 드러나는 사건이다. 지능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한 번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지만 지적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었고, 만 13세를 2개월 넘겼다는 이유로 강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놀라운 것은 성폭력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지원하던 기관이 모든 지원을 종료하고 방치해버렸다는 사실이고, 성폭력 국선변호사 역시 성매매사건이라 하여 법적 권한이 아니라고 하였다. 현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임이 불가하고, 전문 지원기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아청법에는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의 교육이 지원의 전부이며,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이상 전무하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성매매범죄와 성폭력범죄의 경계 사이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 범죄가 혼재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하루속히 법률이 피해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본 센터 법률지원단이 7명의 특정된 성범죄자와 1명의 성폭력범죄자까지 맡아서 지원하고 있으며, 불기소된 2명의 가해자는 항고하여 그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이 결정됐다. 현재 모든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이다.

4. 나가며

우리나라도 당사국 중 하나이고 1991. 12. 20. 자로 적용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4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b)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c)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이에 대한 선택의정서에서는(대한민국 적용일 2004. 10. 24.) 제1조에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명시된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을 금지한다고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또한 이의 적용에 동의하였다. 제2조 나항에서는 “아동성매매”를 보수나 다른 대가를 받고 아동을 성적 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이러한 범죄가 자국 형법에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과 이러한 행위에 대한 미수 및 공범 또는 참여에도 같은 내용이 적용되어야 하고, 적절한 벌칙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7조에는 당사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 이 범죄를 행하거나 돕는 데 쓰인 자료·자산 및 그 밖의 수단 등의 물품, 이러한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을 적절하게 압수몰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과 범죄를 행하는 데 이용된 장소를 임시 또는 최종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조에서는 이 의정서에 명시된 범죄의 피해 아동에 대한 형사제도상 대우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할 것과 피해를 입은 아동과 일하는 사람이 적절한 훈련, 특히 법학·심리적 훈련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9조에는 당사국은 완전한 사회복귀 및 신체·심리적 회복을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지원을 위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러한 국제법의 기준에

부합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아청법의 제정과 효과적인 실행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성착취(CSE)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면서 ‘아동 성착취’를 “불법 거래, 성매매, 매춘 관광, 우편주문신부, 포르노, 폭행, 근친강간, 강간, 성희롱 등을 통해, 존엄, 평등, 자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아동의 인권을 주로 성인이 말살함으로써, 아동을 확대하고 아동의 성을 착취하여 성적 만족이나 금전적 이득, 영달을 꾀하려는 상습”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상업적인 아동의 성착취’(CSEC)는 “금전적 또는 기타의 경제적 이유를 목적으로, 또는 적어도 그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아동성착취”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경제적 교환은 금전일 수도 금전이 아닌 것, 예를 들어 음식, 피난처, 마약 등 일수 있지만, 예외없이 착취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면서, 관련 아동의 기본권이나, 존엄, 자율, 신체적, 정신적 건강 등은 말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용어는, 1996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상업적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세계 회의에서 ECPAT가 착안한 이후로 지금까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한다. 이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주로 ‘아동 성매매’란 말이 사용되었으나 ‘성매매’라고 부를 때에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성매매는 부도덕과 연결되며, 그 피해자가 아동이라 할 지라도 이러한 편견에 따르는 혐오가 줄어들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동 성착취’라는 이름으로 바뀌 쓰게 되었고, 이러한 명칭 개정을 통해 이것은 아동에 대한 가장 참을 수 없는 인권 침해 현상으로 바르게 볼 수 있게 되었음과 이 문제에 대한 생각과 사고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 정의가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국제적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아동 성매매와 생존을 위한 섹스는 동일한 현상으로, 돈이나 기타의 대가, 예를 들어 음식, 피난처, 마약 등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생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 성매매란 가능하지 않으며, 어떤 종류의 보상과 연계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활동은 모두 강간이나 성적 학대다.” 우리가 아동 성매매를 단순히 성매매로 이해한다면 아동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어버리고 따라서 해결책은 범죄적인 면에 집중되기 쉽다. 그 결과, 국가의 의무는 범죄

자를 잡는 것 정도로 축소될 수 있고, 아동 피해자의 권리를 증진하려는 쪽은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주된 목적은 일개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적, 국제적 수단들을 강구하는 데 있다.⁵⁾ 따라서 아동·청소년에 가해지는 성폭력, 성매매 등을 우리는 ‘성착취’ 행위로 분명히 개념정의 하여야 하며 개정될 아청법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성폭력과 성매매를 구분함으로써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을 구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또한 성착취에 희생된 아동·청소년이 가해자가 착취하는 과정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거나 범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이 법적으로 희생자의 신분이며 이에 따라 대해짐을 보장해야 한다.

5) ‘아동성착취’에 대한 부분은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2004),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공약 이행 점검회의 참가 보고서”를 발췌, 인용하였다.

청소년 성매매 문제, 같이 얘기 좀 해 봅시다!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교육인가? 처벌인가?

발제 2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의 위헌성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 중심

대표 발제 : 강정은 변호사*

재판청구권, 평등권,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에 대하여

대표 발제 : 김병희 변호사*

*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청소년성보호법 헌법소원팀**

박숙란 변호사, 김차연 변호사, 천지선 변호사, 정정훈 변호사, 김병희 변호사,
강정은 변호사, 최석봉 변호사, 김수연 변호사, 서경원 변호사

발제 2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의 위헌성

-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를 중심으로 -

강정은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1. 서론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법」(이하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죄를 범한 소년”과 같게 취급됩니다. 문제되는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6호 중 “(제13조 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 부분 및 제7호, 제38조, 제39조, 제40조 (이하 ‘이 사건 조항’)입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조항이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를 중심으로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45

2.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취지

대상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규정은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것)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로 법률의 이름만 변경된 채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상아동·청소년 규정들은 “청소년을 피해자

*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청소년성보호법 헌법소원팀(박숙란 변호사, 김차연 변호사, 천지선 변호사, 정정훈 변호사, 김병희 변호사, 강정은 변호사, 최석봉 변호사, 김수연 변호사, 서경원 변호사) 대표 발제

로 보고 이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¹⁾ 대상아동·청소년을 정의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연혁 별로 살펴보면,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²⁾으로 정의하다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³⁾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여, 이 사건 조항에 이르게 됩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이유⁴⁾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 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들을 보호·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 근절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 조항인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매 청소년을 처벌이 아닌 보호와 구제를 하려는 것이 입법 의도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1) 兒童·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案 심사보고, 12쪽, 정무위원회(2000.1.) 및 兒童·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案(박상천 의원 외 104인), 靑少年保護法中改正法律案(권영자 의원 외 131인) 검토보고서, 14쪽,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1999.11.)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 2000.7.1.] [법률 제6261호, 2000.2.3., 제정] 제13조 제1항

제5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6조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등)
제7조 (알선영업행위등)
제8조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등)
제9조 (청소년 매매행위)

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06.6.30.] [법률 제7801호, 2005.12.29., 일부개정] 제13조 제1항

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제정이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3. 신체의 자유 침해

가. 신체의 자유의 의의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헌법 제10조 후문). 그리고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자유와 권리도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됩니다(헌법 제12조).

특히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역사에서 주로 통치권력과 지배자의 강압에 의하여 침해 받아 왔는 바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국가공권력으로부터의 보장이 중핵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의하여 침해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불가피한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국가형벌권의 부당한 행사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2조 제2항, 헌법 제27조 제4항, 헌법 제37조 제2항 등).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으로(헌법재판소 1991. 7. 8. 자 91헌가4 결정), 범죄의 구성요건과 처벌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자 2011헌가22 결정).

이 사건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 중 죄형법정주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배 여부가 문제되므로 대상아동·청소년에게 부과하는 보호처분의 성격을 알아 본 뒤, 이하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나. 이 사건 보호처분의 성격

우리나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의료보호시설의 위탁, 소년부송치(소년법 제32조)가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기본적으로 성매매 청소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 기간 장소에 머무르거나, 소년법이 정한 장소에 출석해야 하는 등 신체의 자유의 제한을 수반합니다. 신체의 자유의 제한을 수반하는 보호처분의 성격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보호처분과 형벌의 차이

형벌의 전제는 범죄이나, 보호처분은 범죄소년은 물론이고 범죄소년이 아닌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해서도 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제는 범죄가 아닙니다. 또한 형벌은 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보호처분은 비행소년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단이 아닙니다.⁵⁾ 보호처분은 보호처분을 받을 당사자인 소년의 성격의 교정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일반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형벌과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2) 강제처분, 벌, 상습성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로서의 보호처분

그러나 보호처분은 국가에 의한 강제처분의 하나입니다.⁶⁾ 소년법 제53조에서도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 자신의 의사가 무엇인가에 관계없이 행해집니다. 보호처분이 경우에 따라 ‘벌’을 수반하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으며, 법이 그와 같은 ‘벌’의 사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것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⁷⁾이 규율에 위반한 재소자에 대하여

5) 소년법, 290쪽, 한국소년법학회(2006)

6) 소년법, 292쪽, 한국소년법학회(2006)

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훈계 2. 원내 봉사활동

일정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⁸⁾

한편, 문제소년을 발견한 경찰이 훈방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식으로 입건하면 그때부터 범죄기록이 남게 되며, 특히 소년심판에서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경력 자료로 남아 이후로도 오래도록 따라다니게 됩니다.⁹⁾ 이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습성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¹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년법원 송치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까지도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아 허용됩니다.¹¹⁾ 이 밖에도 대법원은 형법의 누범가중규정이 소년법에서 말하는 “자격에 관한 법령”이 아니며,¹²⁾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전과가 소멸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한다.¹³⁾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14세 이상인 자에게 지정된 실내에서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신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 박영규, '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7~70쪽, 소년보호연구 제16호(2011.6.) 참조

9) 최병각, '소년보호처분의 전과와 형 가중', 973~996쪽,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7호(2009.3.) 참조

10)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87 판결;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963 판결; 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도1255 판결

11)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1호) 및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4호 및 5호), 보호시설에 위탁(6호 및 7호), 소년원 송치(8호)로 이루어집니다. 보호처분은 사회 속에서 일반인과 같이 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의 지도와 통제를 받게 하는 형사정책상의 제도를 의미하며, 형벌의 목적인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사회통합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구금형보다 완화된 형사적 제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안진, 「법과 사회통제」, 『법사회학, 법과 사회의 대화』, 243~255쪽, 남남출판사).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포함되며(울산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2고합170 판결), 보호처분을 받은 경력을 범죄의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고 있고(1973. 7. 24. 선고 73도1255 전원합의체 판결), 양형의 근거로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들고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고합354, 2014전고32(병합) 판결).

12) 대법원 1993. 2. 23. 선고 93도69 판결

13)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 2896 판결, 82감도626 판결

(3) 소결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아동·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면이 없지 아니하고, 보호처분이 수사경력 자료에 기재되어 상습성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될 여지까지 있어 형벌에 준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문제점

일단 대상아동·청소년이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경찰이 대상아동·청소년을 수사하여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법원 소년부 송치여부를 검토한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에 송치하여 보호처분, 소년부 송치가 부적절할 경우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경우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는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으며, 특히 성폭력 성매매 가해 청소년과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인에게 이루어지는 보호처분보다도 더욱 중한 처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¹⁴⁾

1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서의 출입금지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상담위탁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적정성의 원칙 위반

헌법 제12조 제1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규정하여 불법적인 처벌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벌(處罰)이라 함은 형사상의 처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불이익 또는 고통이 되는 일체의 제재를 말합니다.¹⁵⁾

죄형법정주의 내용 중 명확성의 원칙은 ‘형법은 그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적정성의 원칙은 ‘형벌규범이 사회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¹⁶⁾는 원칙입니다. 죄형법정주의는 형벌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으로 보호처분에도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크다고 볼 것입니다.

(1) 명확성의 원칙 위반

‘형법은 그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청소년성보호법 자체가 아래와 같은 모순성을 가지고 있어, 법률이 실질적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강제처분이 어떤 것인지를 예견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 제1항 불처벌원칙 규정과 보호처분의 처벌성을 내포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자체로 모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성매수 이전 단계를 처벌하기 위해서 ‘유인, 권유’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수 전 단계의 유인, 권유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매매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도 ‘성을 팔도록 권유

15) 권영성, 헌법학원론, 414~415쪽, 법문사(2006)

16) 이재상, 신정판 형법총론, 18쪽, 26쪽, 박영사(1998)

하는 행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¹⁷⁾ 이미 성매매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청소년 또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수자가 성매매의 기수에 이르면, 상대방은 대상아동·청소년이 되고, 성매수자가 구성요건은 다르지만 성매매의 전단계로 볼 수 있는 성매매의 유인, 권유에만 이르면 상대방은 피해아동·청소년이 된다는 점에서 법률이 실질적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예견하기 어렵습니다.

(2) 적정성의 원칙 위반 가능성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본질적인 사회 가치를 위한 수단인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목적이라면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한 목적이 달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적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규정 및 대상청소년에게 가해지는 보호처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17)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3934 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판시사항】

[1]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자를 물색하고 있던 청소년 갑과 성매매 장소, 대가 등에 관하여 구체적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갑에게 전화로 요구 사항을 지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마. 신체의 자유 침해

이 사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건 조항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청소년성보호법 제1조)”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수단의 적절성

이 사건 조항의 ‘보호처분’이 가진 위하적 효과가 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고려한다면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조항은 궁극적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할 수 없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아님은 물론, 오히려 목적 달성에 장애로 작용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수단의 적절성’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가) 이 사건 조항은 청소년성보호법이 의도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청소년성보호법은 기존에 성매매 청소년들도 윤락여성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차별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것에서, 규율의 주안점이 ‘성을 파는 청소년’이 아니라 ‘성을 사는 구매자’에게 옮겨가고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인식의 전환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를 우리 사회의 선량한 성풍속을 지켜 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관점을 가미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자 2011헌가1 결정).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대상아동·청소년’을 윤락여성의 범주에 포함하여 범죄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며, 형사적 제재인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 내지 제40조). 즉 ‘성을 파는 청소년’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청소년들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을 사는 구매자’를 고발하지 못하고, 사회적 낙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청소년 성매매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이 사건 조항은 청소년 성매매 근절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성매매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없애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되는 가장 기초적 토대인 가족자본의 부재와 인적 자본의 결핍,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라고 볼 수 있어, 성매매를 한 청소년의 대부분이 가족 빈곤으로 인한 가족 해체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¹⁸⁾ 또한 청소년 성매매는 가정폭력, 성폭력과도 관련성이 매우 높으며(‘탈출형 성매매’), 가출로 인한 빈곤과 생계비 마련이 성매매 유입의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생계형 성매매’).¹⁹⁾ 그리고 그에 따라 의료적·정신적·경제적 지원 등 지원서비스 강화가 대책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필요는 청소년이 유인, 권유 또는 강요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유인, 권유 또는 강요되지 않은 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여 범죄자로 낙인하고, 결과적으로 지원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은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다)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청소년 성매매수자 처벌과 아동·청소년 구제에 공백이 발생합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아동·청소년이 ‘피해아동·청소년’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이 ‘유인, 권유 또는 강요’ 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

18) 이유진,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NYPI 청소년정책리포트 Vol. 53, 3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6.)

19) 성매매 관련성 현장 체감 정도를 묻은 결과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관련되지 않음이 7.9%, 가정폭력과 성매매가 주로 관련됨이 10.3%, 성폭력과 성매매가 주로 관련됨이 13.9%, 가정폭력과 성폭력 모두 성매매와 관련됨이 67.3%로 나타났습니다 {이유진, 윤옥경, 조윤오, “아동청소년성보호종합대책연구”, 168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시 말해 ‘유인, 권유 또는 강요’의 인정은 ‘피해아동·청소년’을 구제하고 ‘유인, 권유 또는 강요’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청소년 성매수자를 처벌하는 데에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유인, 권유 또는 강요’되었는지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여,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결정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강요와 협박에 의한 “타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많았고, 성매수자가 폭력을 행사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²⁰⁾

그러나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청소년 스스로 ‘유인, 권유 또는 강요’의 의미를 이해하여 그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진술하는 경우는 드물며, 반대로 청소년 성매수자는 “청소년이 먼저 접근하였다.”, “사랑해서 그랬다.” 등의 변소를 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과의 성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덜고자 하는 주장은 욕망과 권리를 분간 못하는 태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유인, 권유 또는 강요’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처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폭행, 협박과 같은 행위가 물적 증거를 통해 인정되지 않으면 유인, 권유 또는 강요가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많은 경우에 신고 시점에 이르면 ‘유인, 권유’에 이어 성매수 범죄사실까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수사기관은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하여 제13조 제2항이 아닌 제13조 제1항²¹⁾로 의율하면 되기 때문에 ‘유인, 권유’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결국 아동·청소년은 ‘대상아동·청소년’으로서 성매수자와 공범의 지위에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유인, 권유 또는 강요’된 청소년이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인정되

20) 이유진, 위 논문(2014. 6.), 6쪽

21)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는 매우 어려우며, 반면 청소년 성매수자는 단순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에 대한 책임만을 질 뿐 ‘유인, 권유 또는 강요’했다는 점에 대한 책임은 면하게 됩니다. 즉, 청소년 성매수자 처벌과 아동·청소년 구제에 공백이 발생합니다.

(라) 이 사건 조항은 ‘피해아동·청소년’ 조차 구조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알선, 유인 내지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그 결과 성매매 피해 또는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조차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아동·청소년’은 자신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게 되며, 성매수자 및 성매매알선자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결국 처음 입은 피해에서 구조되지 못한 피해 아동·청소년은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2차, 3차의 피해를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피해와 범죄를 구분하지 못한 채 알선에까지 가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2) 피해의 최소성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이 성매매 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있으나, 만일 수단의 적절성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이 사건 조항은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성매매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가) 보호처분 외에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적은 방법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라는 수단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사회방위 및 특별예방적 목적이라는 공공의 필요에서 대상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공권력의 행사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엄중한 요청에 따라 기본권 침해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즉 만약 보호처분보다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적은 방법이 있다면, 그에 앞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적은

방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매매를 한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외의 방법은 이미 법률과 정책을 통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되지 않는 결과, ‘피해아동·청소년’과 같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없고 형사적 제재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대상아동·청소년’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아동·청소년’을 범죄자로 규정하여 처벌하기보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2015. 3. 26. 발생한 성매매 청소년(14세) 살인사건을 계기로 연대한 성매매 청소년 보호·지원 기관(“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²²⁾)들은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으

22)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 공동 주관단체 및 참여단체 명단
 [공동주관] (사)관악교육복지네트워크, (사)두루, (사)들꽃청소년세상, (사)탁틴내일, (사)한국 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재)동천,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세상을품은아이들, 수원여성의전화, 십대여성인권센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다시함께상담센터
 [참여단체] (사)막달레나공동체, (사)수원여성의전화부설성매매피해상담소어깨동무,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민우회, (사)한국여성의전화,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Wing,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원위기청소년교육센터,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관악교육복지센터, 관악청소년자활지원관, 광주위기청소년교육센터, 구립우리자리청소년공부방, 그룹홈민들레가정, 그룹홈 새꿈터, 그룹홈 새밭토끼풀가정, 그룹홈 아모LED코스모스가정, 그룹홈아모그린텍잠미가정, 그룹홈아모센스참나리가정, 그룹홈아모텍진달래가정, 그룹홈야긴새벽이슬가정, 그룹홈오디가정, 그룹홈인애해바라기가정, 그룹홈한신예수가정, 꿈꾸는아이들의학교,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대구여성회,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너머서, 대전광역시청소년드림인센터, 대전위기청소년교육센터, 동작청소년문화의집, 들꽃피는학교, 마인하우스, 모퉁이쉼터, 부산위기청소년교육센터, 부천무한도전학교,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수련관, 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 서울시립신림청소년쉼터, 서울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서울학교사회복지사협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심디딤돌쉼터, 소냐의집, 심리상담 내디딤, 쌍문청소년문화의집, 아담스지역아동센터, 안산시청소년남자쉼터, 여울여성희망센터, 오내친구성폭력상담소, 우리들쉼자리,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유프라시아의집, 의정부시이동청소년쉼터, 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공동체물푸레나무, 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명동, 청소년자립패이상한나라, 청소년자치연구소, 커피동물원,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 평화의샘, 한국여성의집, 한국YMCA전국연맹, 한신쉼터, 함께걷는아이들, 휴먼케어센터, 휴샘상담센터

로 가장 먼저 ①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② 청소년 성착취 예방을 위한 유인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과 ③ 청소년 성매수범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수사 및 재판실무를 개선할 것, ④ 청소년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담체계와 성착취 피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나) 보호처분은 성매매 청소년이 성매매 과정에서 입은 인권 침해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아동·청소년은 물리력과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측면에서 성매수자, 포주에 대하여 약자이며, 불평등한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성매수자들은 돈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에게 가학적인 성행위를 요구하며, 때로는 그 과정에서 폭력마저 일삼습니다. 이처럼 성매수자로부터 받는 위협이 증가하자 성매매 청소년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포주의 통제 및 관리를 받는 것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러한 포주와의 관계는 아동·청소년에게 또 다른 올라미가 됩니다. 2015. 3. 26.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성매매 청소년(14세) 살인사건은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과정에서 성매수자, 성매매 알선자로부터 겪는 인권침해의 상황을 드러낸 단면이라고 할 것입니다.²³⁾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인권침해를 입은 성매매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사건 조항이 오히려 성매매 청소년의 인권침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은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자의 지위에서 조사를 받고 범죄소년의 지위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스스로 범죄자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미래의 삶에 대한 전망을 상실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좌절을 경험하며, 정상적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타락한 여성’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낙인을 그대로 답습합니다.²⁴⁾ 결국 성매매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그

23) 연합뉴스, “경찰, ‘모텔살해’ 여중생에 성매매 알선 2명 영장”, 2015. 3. 28.자 등

24) 김인숙, “시설거주 10대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 과정”, 137~138쪽, 한국아동복지학 30호(2009)

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조력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아동·청소년의 탈성매매 및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²⁵⁾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조항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이고, 이 사건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사익과 공익이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보호”로 일치합니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을 검토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만약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자유’가 사익이고, ‘청소년 성매매 근절’이 공익에 해당한다고 양분한다고 하여도, 앞서 수단의 적절성에서 검토하였듯이 이 사건 조항은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닙니다.

나아가 청소년 성매매는 주로 성인 남성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성’에 대한 성인남성과 아동·청소년의 사회경제적 권력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이 같은 권력관계를 은폐하고 청소년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보다 강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성매매 성인여성 중 80% 이상이 청소년기에 성매매를 시작하였다는 통계는 이와 같은 우려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 성매매 근절’이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없음은 물론, 오히려 공익달성에 장애로 작용하여 사익과 공익 모두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4) 소결

결론적으로 이 사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범죄자로 낙인하고 지원서비스에서 벗어나게 하므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장애로

25) 김고연주, “성매매 경험이 있는 십대 여성들의 인권침해 사례연구”, 200~209쪽, 민주주의와 인권 제11권 제1호(2011)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사 적절한 수단이라고 하여도 다른 수단을 통해 신체의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며,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달성되는 공익조차 찾아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4. 결론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 성매매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 가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의무가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국선변호사 선임 지원절차²⁶⁾에서 배제시키는 등 각종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국가에 의한 강제처분의 하나로 실질적인 형사적 제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은 보호처분을 부과하고자 하는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수범자 누구나 예견 가능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호처분은 청소년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청소년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본질적인 필요성이 요청되는 수단이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조항은 청소년성보호법이 의도하는 수단도 아니며, 오히려 청소년 성매매 근절에 기여하지 못하고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26)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2 제1호 나목

서는 성매수자 처벌과 아동·청소년 구제에 공백을 발생시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아동·청소년’조차 구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아닌,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적은 기존의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체계를 적용하는 수단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성매매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아동·청소년의 탈성매매와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입니다. 신체적 거동의 임의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자유와 권리도 무의미합니다.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이 사건 조항은 더욱 엄격한 기본권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제 2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의 위헌성

— 재판청구권, 평등권,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에 대하여 —

김병희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1. 서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고 합니다.)상 대상청소년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재판청구권,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2. 재판청구권 부분

가. 재판청구권의 의미

재판청구권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적극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소극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판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증언하는 이외에 형사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역시 위 재판청구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청소년성보호법 헌법소원팀(박숙란 변호사, 김차연 변호사, 천지선 변호사, 정정훈 변호사, 김병희 변호사, 강정은 변호사, 최석봉 변호사, 김수연 변호사, 서경원 변호사) 대표 발제

나. 재판청구권의 연혁

재판청구권은 군주의 권력을 전제로 한 자의적 재판을 배제하고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으로부터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 실질적인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으로 역사적으로는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에서 배심재판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을 기초로 합니다.

즉, 실질적인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의 역사적 의의라는 것입니다.¹⁾

(재판청구권이 발생하게 된 원인 및 그 역사적 의의와 현재 우리 헌법에서 청구권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를 종합하면, 누구든지 권력이나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본인에게 발생한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에 재판청구권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대상청소년 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한

(1) 대상아동청소년은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처분 때문에 대상아동청소년들은 성매수를 한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기피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대상아동청소년들의 고소권을 제한하여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며,²⁾

(2) 대상아동청소년의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형사절차상 발생 할 수 있는 피해

1)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역사적 의미에 맞추어 ‘재판청구권은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률과 재판에서 적용될 실제적 법률이 모두 합헌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비밀재판을 배제하고 일반 국민의 감시하에서 심리와 판결을 받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94헌바46)

2)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고소를 한 고소인에게는 무고죄의 책임이 따르는데 이 경우에는 무고죄 외에 대상청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다른 고소인에 비하여 다르게 취급하고 고소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를 방어하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또한 제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역시 재판 청구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입니다.³⁾

라. 재판청구권 침해여부와 검토

(1) 재판청구권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

헌법재판소는(헌재 2002.10.31. 2001헌바40) ‘재판청구권은 법적 분쟁의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적어도 한번의 권리구제절차가 개설될 것을 요청할 뿐 아니라 그를 넘어서 소송 절차의 형성에 있어서 실효성있는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청하며, 비록 재판절차가 국민에게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 규정들에 의하여 법원への 접근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렵게 된다면, 재판청구권은 사실상 형해화 될 수 있으므로, 바로 여기에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즉, 어떠한 사안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재판청구권에 대한 침해

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대상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처분이 진행되고 있고, 이 처분으로 인하여 받을 불이익 때문에 대상아동·청소년들이 고소를 꺼리고 있는 것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제1항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들을 적용하면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해서만 변호사선임의 특례를 적용받고, 대상아동·청소년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조력을 위한 변호인선임이 안될 뿐 아니라, 피해자국선변호인의 조력조차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보호처분이라는 부담으로 인하여 대상아동·청소년들의 재판청구권(고소권)은 사실상 제한을 받고 있고 이것은 법원에의 접근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렵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②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단순히 선량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되지 못하고 사회적·경제적인 지위도 열악한 아동·청소년을 금전적으로 유혹하여 간음함으로써 그들의 원활한 인격형성을 방해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야 할 아동·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에 손상을 입힌다는 점에 있어서 그 가벌성이 가중된다.’(2011헌가1)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더라도 보호대상인 청소년 중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만 변호인 조력권 등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 절차적 규정들에 의하여 법원에의 접근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렵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상아동청소년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입니다.

3. 평등권

가. 평등권의 의의

평등권이란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평등은 상대적평등⁴⁾을 의미하며 적법한 상태와 행위만이 보호의 대상이 되고 위법행위는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처우하되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내지 불평등은 허용된다.

(평등권의 법적성질에 대하여는 ① 인간의 자연적 상태에서부터 누려 온 생래적·천부적 권리(전국가적 자연권성) ② 불평등한 처우를 받지 않은 것(소극적 권리)은 물론 평등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적극적 권리)(주관적 공권성 및 양면적 권리성) ③ 모든 기본권을 균등하게 실현하기 위한 기능 내지 방법으로서 기본권전반에 공통으로 작용되어야 할 기능적·수단적 권리(기능적·수단적 권리성) ④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미주적인 국법질서의 구성요소(객관적 법질서성)이다)⁵⁾

나. 평등권의 연혁

평등권은 고대로부터 연속적으로 이어오던 것(천부적 권리임을 상기)으로 근세에 이르러 법률 앞의 평등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 및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등장하였고 우리 헌법도 전문⁶⁾ 및 제11조⁷⁾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등권은 오랜 기간 어디에서나 중요한 기본권임은 인정되어 왔으며 평등권 보장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를 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 대상청소년 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한

(1) 다른 보호법⁸⁾ (ex. 청소년보호법)은 순수하게 대상을 보호하는 내용의 규정을 담고 있는 것에 비하여 아청법은 대상청소년 규정으로 인하여 보호대상인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이라는 불이익을 가하고 있습니다.

5) 권영성 헌법학원론

6)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7)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8) 공익신고자보호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등

(2) 아동청소년의 상대방인 성인은 성매매·성폭력을 구분하지 않고 성범죄로 취급되어 처벌되는 것에 반하여 아동청소년은 성매매의 상대방인가 성폭력의 피해자인가를 구분하여 처분합니다.⁹⁾

(3) 대상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성매매에 대하여 처벌하는 성인의 경우 미성년자와는 달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함에도 같은 처벌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 평등권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의 척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보호대상인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므로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 평등권의 침해 검토

(1) 입법목적의 정당성

이 법의 목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됩니다.

9) 이 문제는 아동청소년이라는 보호의 대상을 성매매와 성폭력으로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2) 수단의 적합성

성매매 상대방이 된 대상아동청소년에게 또 다시 성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대상아동청소년이 성매매의 유혹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분리되거나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는 듯합니다.

(3)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대상아동·청소년에게 보호처분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은 대상아동·청소년들이 행한 자발적 성매매에 대하여 잘못을 인식시키고 벌을 주어 위하로써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적달성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결방식은 성범죄가 성욕이 아닌 권력의 상하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아동·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 및 가출한 여성청소년의 경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자체가 봉쇄되어 있다는 현실을 간과한 처우입니다.

즉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지정된 아동청소년들을 처벌위주의 방법으로 처우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입법정책에 의하여 보호대상의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고, 차별취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법 대상아동청소년에 관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4. 인격권, 행복추구권

가. 인격권, 행복추구권의 의의

행복추구권에서의 행복은 각각 다른 가치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의적인 표현이지만 공통점을 추출하면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추구할 수 있

는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¹⁰⁾

나. 인격권, 행복추구권의 제한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성매매피해자가 피의자의 지위에서 조사받고, 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강제처분의 실질을 갖는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게 됩니다.

다.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침해

위와 같이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처벌로 보여지는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들로 하여금 낙인효과¹¹⁾ 및 내면화¹²⁾하게 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을 침해한 것입니다.

낙인효과로 인하여 가해자들은 대상청소년들에 대하여 ‘몸을 굴리는 불량한 청소년들이므로 벌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강간, 폭행, 살인 등의 범죄를 범하는 것을 정당화 합니다.

반면 위와 같은 피해를 받거나 다른 종류의 불이익을 받은 대상청소년의 경우 본인들이 위와 같은 불합리한 처우를 받더라도 감수해야 할 상황으로 생각하고 본인들의 권리 주장을 단념하게 됩니다.

10) 헌법재판소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며, 행복추구권에 대하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포괄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자유권을 의미한다고 하면서(2004헌마207), 위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모든 기본권의 중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으로 생명권 못지않은 우리 헌법상 최고의 가치라고 하였습다.(2008헌마385)

11)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아닌 성범죄자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격리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낙인효과로 말미암아 대상아동청소년들은 본인을 스스로 성범죄자로 인식하며 나아가 자신은 다른 청소년들과 다르므로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5. 결론

보호대상을 지정하였다면 보호대상에 대한 보호절차 및 대우는 보호대상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 대상아동청소년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 지정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재판청구권, 평등권,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이 제한되고 다른 보호대상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우가 예견되어 관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은 구체적, 사실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하므로 위헌이라고 할 것입니다.

6. 형벌(기타)

가. 개념

사회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범죄행위를 범한 범죄자로부터 일정한 법익을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사회일반인의 법익보호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공적 제재수단이라고 합니다.¹³⁾

여기에서 일정한 법익을 박탈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자유 또는 권리영역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요건

형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형벌권의 주체는 국가이어야 한다 ② 형벌은

13) 김일수 “형벌이론의 기초이론”

범죄를 이유로 범죄자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것이다 ③ 일정한 법익을 박탈한
다는 조건이 성립하여야 합니다.¹⁴⁾

그리고 형벌은 고통 또는 불유쾌하다고 간주되는 다른 결과들을 내포하고 있
어야 하는데 다의적일 수도 있으나 구성원 다수가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
면 해악성은 인정되어 형벌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¹⁵⁾

다. 형벌의 기원

형벌의 발생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어쩌면 그 이전일 수도 있습
니다.¹⁶⁾ 하지만 그 목적은 현재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하였다면
가해자에게 고통이라는 반대급부를 주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형벌이라는 말은 14세기에 등장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비난 또는 질책의 의
미인 ‘Verweis’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리스어인 ‘포이네’에서 유래
하며 이 표현이 원래 피해자의 친족에게 지불하는 속죄금을 의미하였다는 점
을 감안하면 형벌의 기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부족에 대한 복수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¹⁷⁾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형벌은 응보 및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정책화 구체화
되었습니다.¹⁸⁾

14) 김재중 ‘형벌제도의 개선방향’ 17p

15) 김재중 ‘형벌제도의 개선방향’ 18p

16) 자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사회생활을 하기 이전 스스로 체벌을 하는 행위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 배종대 ‘형사정책’

18) 형벌의 목적에 대하여는 절대설, 상대설, 절충설 등의 논의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형벌의 원칙

하지만 어떤 논의가 있더라도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보충성¹⁹⁾, 책임주의²⁰⁾, 합리주의²¹⁾, 인간존중주의의 원칙²²⁾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 소결

어떤 것이 형벌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자유나 권리를 박탈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정도에 대하여는 구성원 다수의 판단으로 정하여 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보호처분이 형벌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신의 자유나 권리를 박탈당하였다고 느끼는가입니다.

그리고 보호처분을 형벌이라고 한다면 보호처분을 받는 사람이 형벌의 대상 즉 범죄자인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범죄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행위이고 형벌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 및 재발을 방지하는 과정입니다.

대상아동청소년의 경우 성매매의 상대방에게 어떠한 피해를 가하였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면 과연 이들이 형벌의 대상인가를 다시 검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9)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방위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유형 이외의 다른 대체수단을 이용하여야 할 것

20) 형벌의 정도는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1) 형벌에 대하여 민주적 토론과 상호 의사교환의 토대 위에서 얻을 수 있는 공감대를 토대로 기준이 정하여야 한다.

22)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을 해하여서는 안 된다.

청소년 성매매 문제, 같이 얘기 좀 해 봅시다!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교육인가? 처벌인가?

지정위원

문선주
(인천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오정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김학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2팀장 경감)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진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외국변호사)

김란희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푸른꿈터 소장)

토론 1

소년보호처분의 목적과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적용

문선주 (인천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1.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적용

최근에 『좋은 판사, 좋은 법원을 토론하다』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하여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법원의 권한과 의무가 판사를 통하여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안에 적용될 법이 무엇이고, 그 적용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좋은 법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대전제가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해는 크고 작은 인식의 틀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은 현실 속의 사안을 주관적으로 인식하여 구체화하는 과정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사례로 본 아동법상 대상청소년의 문제점』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와 이에 대한 대책의 부재, 법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으로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더욱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됨으로써 거치게 되는 사법절차의 정점이 소년보호재판이라는 점에서 소년부 판사로서의 책임을 실감하게 되기도 합니다.

현행 소년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체계하에서 소년부로 송치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재판 과정은 현행법을 대전제로 이루어지게 되지만, 소년보호재판과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여하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현행 소년보호절차에서 실현

가능한 보호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으로 토론문에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년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체계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고(소년법 제1조),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나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소년법 제4조 제1항)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분을 전제로 하고,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검사가 기소하는 단계에서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이러한 소년법의 체계내에서 우선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을 배제하고(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 제1항), 검사가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청소년성보호법 제39조 제1항)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매매의 상대방이지만 유인, 권유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청소년에 해당되어 처벌이 아닌 법에 규정된 보호를 받게 됩니다.

3.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송치 현황

인천지방법원 소년부는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를 사물관할로 하고, 소년보호사건은 2014년 3200여건, 2015년 9월말 현재 2700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성매매를 범죄사실로 하여 송치된 사건은 없었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또는 (아동·청소년)죄로 송치된 사건이 2014년 2건, 올해 2건 있었습니다.

4. 소년보호처분절차 및 집행 과정

소년보호처분은 통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경우에 소년의 환경과 성행 등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호소년이 성매매의 상대방이지만 성매수자 등의 유인, 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판단이 필요합니다. 발제문에 언급된 사례들처럼 겉으로 드러난 상황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위까지 고려하면 많은 경우 성매매에 대한 유인과 권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이고,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소년보호처분은 법체계에 있어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라는 것이지만, 그 목적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하여 소년의 보호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에 있고, 이러한 목적에 상응하는 절차를 구현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보호의 영역이 있습니다.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접해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매매가 아니더라도 다른 범죄사실에 기해 소년보호절차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년보호절차를 통해서 실현 가능한 보호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보호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에서 정해지지만, 사전 조사와 처분 이후의 집행에는 다양한 기관과 관계자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심리가 개시되어 보호소년이 법정에서 서기까지는 여러 절차에서 소년사건 담당자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소년보호사건의 관계자들이 소년보호처분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여 소년에 대한 보호와 환경의 개선을 업무의 중점으로 둔다면 보다 적절한 처분과 보호방안을 강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의 집행은 법원이 감독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와 소년원은 법무부 산하 기관이지만, 소년보호처분의 목적을 구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집행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과 지역 사회의 소년

관련 단체, 활동가들이 보호처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여 처분을 집행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로서의 보호처분의 성격과 내용이 비로소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할 것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집행이 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환경 개선을 지향점으로 삼아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의 성격이 엄격히 구별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일단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에서 배제되어 소년보호처분으로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치고 있는 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나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토론 2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대상청소년’ 관련 토론문

오정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성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해당 청소년의 보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나아가서는 미래 세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제자들께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아동· 청소년’ 관련 규정이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아동· 청소년과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대상아동·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해아동· 청소년으로서 동일해서 규율하고, 대상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해당 청소년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을 받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피해자로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발적인 성매매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를 경험한 경우에는 그 연령대에 당연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발제자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아동· 청소년은 성매매의 피해자일 뿐 설령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범죄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성매수의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성매매로 유입되는 원인, 성매수자가 성인일 경우 상대방 아동· 청소년과의 경제력·정보 등의 불균형으로 인해 초래되는 전개 양상의 특이성, 아동· 청소년기의 신체적·정신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이에 적합한 사회적법적인 보호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성매수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인지, 보호처분이 아닌 ‘상담, 지원, 교육’ 등의 프로그램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재활의 관점에서 어느 것이 보다 바람직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사례로 본 아청법상 대상청소년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자께서는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조건 만남 성매매를 하였을 경우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처벌받겠다고 생각하여 현행법에 호소하기 보다는 알선업자들의 지배를 보호로 생각하여 더욱 의지하게 되므로 보호처분이 형사처벌과는 다르지만 ‘사실상 처벌’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실제 보호처분을 받는 아동·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교육을 받을 의무를 갖게 되는 등 보호처분을 처벌로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벌과 보호처분은 법적으로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년법 제1조는 소년법의 입법목적에 대하여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상 보호처분은 처벌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설계된 제도이고, 따라서 보호처분은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심판절차도 공개되지 않는 등 특이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보호처분의 내용 또한 일반 형사적 제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발제자께서는 보호처분이 ‘사실상 처벌’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점의 근거로 실무상 경찰관들이 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려는 청소년에게 ‘너도 처

별받을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수치심, 두려움 때문에 피해내용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게 된 사례를 예로 드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호처분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보호처분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실무상의 문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 제1항은“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사건을 다루는 실무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처리 원칙을 천명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청소년성보호법 제39조 제2항에도 나타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사건의 수사담당자들은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원인과 전개 양상의 특이성, 발달단계에서 아동·청소년기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의“보호 및 재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사건을 다루는 수사담당자들은 가해자의 처벌만큼이나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이 중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수사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수치심을 자극할 만한 언행을 삼가며, 향후 진행될 절차와 관련하여 보호처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검찰에서 실시하게 될 교육·상담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 등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어 해당 아동·청소년이 과도하게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발제자께서는 법원에서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들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아동·청소년들을 ‘어린 윤락녀’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러한 판결들이 계속된다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들은 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예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사건을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것 자체가 더 이상 일반적인 형사절차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결정이고, 이후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적은 보호처분의 본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상 보호처분과 관련해서는 수년간 논의가 계속되어 온 끝에 2007. 12. 소년법 개정을 통해 보호처분의 다양화·내실화 측면에서 다소 진전을 보였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성매매 대상 청소년들이 보호처분에 대해 형사처벌과 동일한 정도의 강제성만 있다고 느낄 뿐 보호나 재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인다면, 이는 보호처분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보호나 재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갖춘 위탁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의 위헌성(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를 중심으로)’ 발제 내용 중 ‘보호처분의 내용이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고, 특히 성폭력 성매매 가해 청소년과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다양화하거나 위탁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제자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는 청소년들 상당수는 빈번한 가출, 적절한 보호자의 부재 등의 문제를 오랜 기간 동안 겪어 오면서 쉼터 등 지원시설의 프로그

램 적응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보이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동·청소년이 지원시설 등의 프로그램에서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만약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면 법원의 보호처분과 성매매 관련 지원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법원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할 때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갖춘 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3

청소년 성매매 대상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교육인가? 처벌인가?

김학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2팀장 경감)

1. 청소년 성매매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 1) 자발적 동의로 보는 시각
 - 성매매를 선택하는 자발성이자 성매매를 그만두려는 자발성 모두를 의미함
- 2) 가족/경제적 이유로 인한 사회구조적 피해로 보는 시각
 - 단순한 자발성, 피해자의 양분화 된 시각을 넘어야 함

2. 청소년 성매매 대상자의 실태

- 1) 온전하지 못한 가정과 성폭행 경험
 - 가출로 인한 빈곤과 생계비 마련(생계형 성매매)
 - 주변친구들의 권유나 부탁,
 - 가정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몰래 성매매
- 2)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
 - 성매매 청소년의 저연령화
 - 죄의식의 약화
 - 성매매의 조직화 경향
 - 가출팸 또래 포주

- 성매수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요구, 교육 강화와 지속적인 보호 관찰
- 가출 후 또래 포주나 성인 남성이 피해 아동 청소년을 강제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청소년 성매매의 궁극적인 원인을 사회문화적 구조가 아니라 청소년의 지나친 배금주의, 물질주의, 도덕적 불감증 등에 있다고 생각, 그리하여 성매수 대상 청소년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가해자로 간주되어 왔음.

그러나 청소년 성매매의 궁극적 원인은 청소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문화적 구조 즉,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적 상실, 상업주의 가치관, 왜곡된 성문화 등에 있음을 인식, 따라서 피해자는 성매수 대상 청소년임을 인식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와 이와 관련 된 제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청소년의 선도 보호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성매매 청소년을 사회구조의 피해자로 이해하고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보호처분을 부과함으로써 이들을 계도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재사회화 시키고자 시행

3. 보호처분에 대한 두 가지 견해

- 1) 현행 법률에서 성매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대상청소년으로 피해 청소년과 다르게 분리하여 절도나 폭행의 가해자와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이를 악용한 성매수자들이 신고를 못하게 하고 지속적인 성매수 범행의 대상이 되고 있음
- 2) 보호처분은 강제처분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라는 의식도 있지만 법적으로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모순이 없다는 견해도 있음

- 3) 장기 상습 가출 후 거리를 배회하고 가출팸을 형성해 생활하면서 성매매 등을 해도 약한 처벌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은 선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

4. 성매매 청소년 피해자 규정 추진

- 1)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구매자 및 알선자는 처벌하되,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을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고 성을 사는 '대상'으로 규정,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2) 보호처분을 폐지하되 수사단계에서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 센터 연계하고 여성가족부 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남인순, 성매매 청소년 '피해자' 규정 추진)

5. 결론

- 1) 죄의식이 상당히 결여되고 상습적이며 자발적인 경우,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에 대한 대안책 마련
- 2) 수사단계에서 성매매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는 인식중요
- 3) 성매매 아동 청소년을 접할시 신고의무화 법적으로 부과
- 4) 성매매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고토록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토론 4

토론문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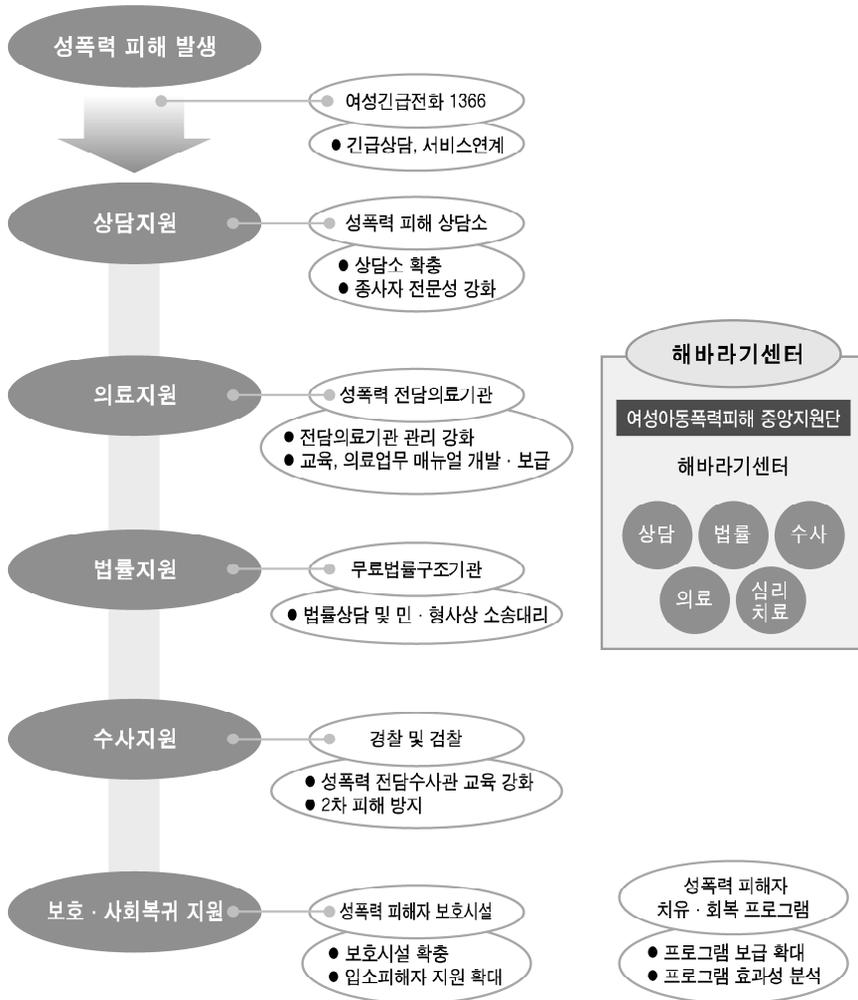
1. 청소년성매매 관련정책 현황

성매매에 연루된 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근거하여 ‘피해아동·청소년’¹⁾과 ‘대상아동·청소년’²⁾으로 분류되어 보호·지원체계가 이분화 되어 있다. 피해아동·청소년은 성범죄의 피해자 혹은 성을 사기 위한 자에게 유인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당한 자이다. 대상아동·청소년은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된 자이다.

피해아동·청소년은 다음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폭력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체계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 1) 제2조(정의) 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 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 2) 제2조(정의) 7. “대상아동·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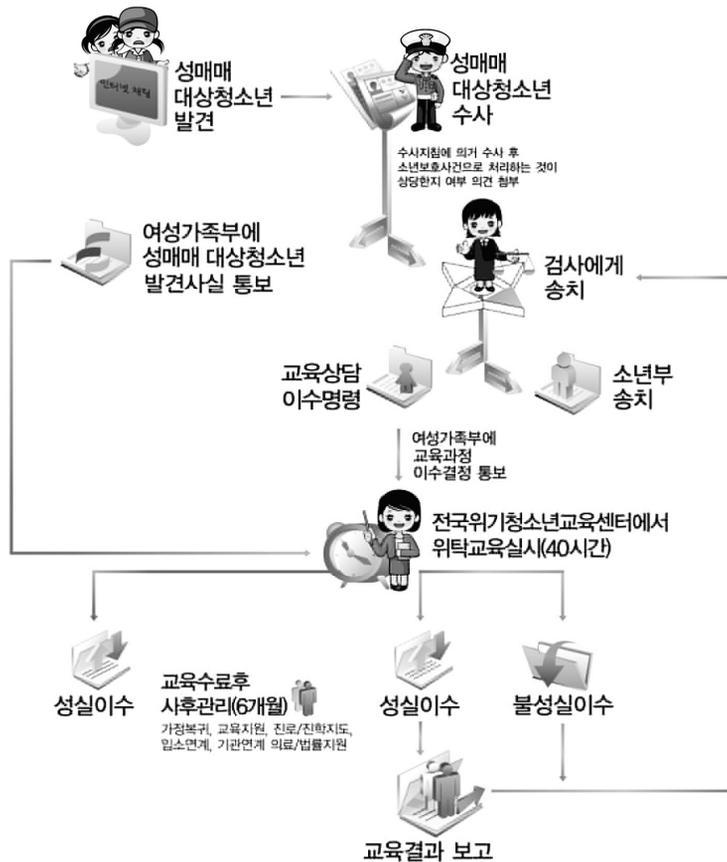
〈그림 1〉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체계 과정



자료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2015)

대상아동·청소년은 다음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³⁾

<그림 2>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체계 과정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2015)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검·경의 통보에 의거하여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에서 5박6일 동안 숙박하면서 교육 실시 후 6개월간 사례관리함. 기본과정 40시간(청소년성장캠프), 심화과정 20시간(희망키움) 프로그램 실시

일반적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 청소년 지원시설(2015년 기준 15개소 운영)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보호, 상담제공	
- 의료·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진학교육 지원 등	
※ 입소기간: 기본 1년, 19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가능	
○ 대안교육 위탁기관(2015년 기준 2개소 운영)	
-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	
- 심신건강회복 및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	

2. 입법적 논의

제19대 국회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발의되었다. 그 중 남인순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대안반영폐기되었다.

〈표〉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성매매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황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5498 2013. 6. 14.	류지영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
6737 2013. 9. 6.	김상희 의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유인·권유 정보까지 확대하여 이에 대한 조치와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유인·권유정보의 차단 및 삭제조치, 수사 협조 등을 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매매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온라인서비스의 자정작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9333 2014. 2. 10.	이노근 의원	랜덤채팅 등 메신저 기능이 포함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관한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이용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홍보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랜덤채팅을 통한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16340 2015. 8. 7.	남인순 의원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자 함. 또한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자료 : 의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재구성

3. 외국사례

대부분의 해외선진국에서는 성매매를 한 청소년(성을 판매한 청소년 또는 성을 구매한 청소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일본 등은 성매매와 관련된 처벌규정이 없다. 독일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성매매를 위하여 고용한 사람(소위, 포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일수벌금형으로 처벌한다(독일 「형법」 제180조의a). 스위스는 성매수자를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스위스 「형법」 제196조), 다만, 성을 판매한 사람의 연령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음. 즉, 성년·미성년 대상에 상관없이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처벌된다.

영국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성매수자는 14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영국 「2003년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제47조). 또한 영국은 동법 제15조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유인행위를 한 경우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데, 즉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어떠한 수단으로 연락을 취한 다음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 또는 만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소위 그루밍법(Grooming Law)).

일본에서는 17세의 나이로(아동 스스로의 의사로)매춘을 하면 피해자로서 취급되며, 성 ‘매수 측’만이 엄중히 처벌된다. 또한, 16세 소녀가 언니의 신분증을 가지고 나이를 속이고 자신의 의사로 성인 비디오에 출연한 경우에도 ‘피해자’로서 취급되어 벌칙(처벌)을 받지 않고, 제작에 종사한 측만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미국의 일부 주(가령 뉴욕주)에는 돈이 오간 성매매의 경우 아동·청소년도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법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 「윌리엄 윌버포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재인가법(William Wilberforc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 of 2008)」 등의 법에 근거하여 성인과 성매매를 한 청소년은 “성착취 혹은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간주되어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다. 일리노이 주법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도 매수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 매춘(juvenile prostitution)’이라는 표현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여 쓰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일부 주⁴⁾를 제외한 외국 입법례에서는 성을 판매하는

4) 그러나 아동 및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한 뉴욕의 주법에서 형사법이나 인신매매법 등에서도 아동 및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각 법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법체계상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다. 아동 성매매 및 알선에서, 성매매를 대가로 돈이 오가면 상대가 아동 및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성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해당 아동 및 청소년도 매춘으로 경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 매수 및 알선/포주 행위는 경범죄 처벌을 받지만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중범죄로 처벌 받는다.

청소년을 처벌하고 있지 아니하다. 스위스와 영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구매한 사람만을 처벌한다⁵⁾.

〈참고문헌〉

- 이유진, 윤옥경, 조윤오. 201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Marihug Ceden. 2012. “Pimps, Johns, and Juvenile Prostitutes: Is New York Doing Enough to Combat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Cornell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22 :153-179
- Katherine Mullen & Rachael Lloyd. 2013. “The Passage of the Safe Harbor Act and the Voices of Sexually Exploited Youth”. *Lawyer’s Manual on Humman Trafficking* (ed. Goodman&Leidholdt). Superme Court of the State of the New York.
https://www.nycourts.gov/ip/womeninthecourts/pdfs/MULLEN%20_HUMAN%20TRAFFICKING_1_d.pdf)

5) 성매매를 불법화하여 금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성매매와 관련된 청소년이 처벌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청소년은 「소년법」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조치 등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론 5

청소년 성매매와 피해자 보호: 영국, 미국, 뉴질랜드의 사례

김 진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외국변호사)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아동은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당사국은 이를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한편, 아동권리협약 채택 이후에도 아동에 대한 성 착취 행위가 지속되고 피해 아동의 보호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UN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 규제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이 선택의정서는 아동권리협약의 목적 실현과 특히 제1조, 제11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 등 협약의 규정 이행을 위한 것으로, 아동을 경제적 착취, 교육에 방해되는 일,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 (협약 제32조), 성 착취와 성 학대 (제34조), 약취, 유인, 거래 (제35조), 그리고 아동복지의 모든 측면에 해가 되는 모든 형태의 착취(제36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아동매매, 성매매, 아동 음란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조치를 확대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아동의 착취나 학대에 해당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위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 글에서는 영미권 국가들 - 영국, 미국, 뉴질랜드 - 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과 성 보호의 목적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쳐왔는지 주로 그 법과 정책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영국

영국에서는 청소년의 성매매를 학대와 성 착취로 여겨 18세 미만의 성매매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의 피해자로 인식, 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지원하며 당사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의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수적¹⁾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2006년에는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of Children, School, and Families, 2010년 교육부로 개편됨)의 주도로 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 아동 복지와 아동 보호를 위한 다기관 협력 지침²⁾을 마련하여 법적, 공적인 부분에 있어 각 부처와 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는데, 이 지침 중 ‘성매매를 통한 학대 아동’ 파트는 청소년 성매매 관련 처벌은 해당 청소년을 착취한 자에게 가해져야 하며, 성매매에 연루된 18세 미만의 아동은 학대의 피해자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성매매라는 선택을 하는 데에는 그 뒤에 빈곤과 강압, 착취가 자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영국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의 성매매와 성 착취에 관한 법적 가이드라인에도 드러나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경찰이 성매매에 연루된 청소년을 접할 때, (해당 청소년이 보호 후에도 온전히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계속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고나 주의를 주는 방식이 아닌 해당 청소년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고, 성매매 청소년을 발견하였을 경우 우선 해당 청소년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요보호아동 보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³⁾

1) 아동법 2004 제10조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협업

- (1) 잉글랜드 내의 모든 지방 정부는 서로 협업하기 위하여 다음의 주체와 소통하며 업무를 조정 분장해야 함.
 - (a) 다른 지방 정부;
 - (b) 각 지방 정부의 파트너들;
 - (c) 지방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전문가나 단체. 해당 분야에서 아동 관련 업무를 하거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 혹은 기관.

2) Department of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06,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gether. 2015년 3월, 교육부의 개정판이 출간됨.

3) Crown Prosecution Service, 2008. Prostitution and Exploitation of Prostitution. Available at: http://www.cps.gov.uk/legal/p_to_r/prostitution_and_exploitation_of_prostitution/

피해 아동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성매매 청소년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지역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보호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 혹은 지역 담당자는 해당 청소년을 지방 정부의 아동사회보호국에 의뢰해 보호하도록 되어있다. 즉, 성매매 청소년은 요보호 아동으로 인지되며, 따라서 다른 학대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아동서비스국 소속 사회복지사, 학교, 보건의료관계자, 경찰 등으로 구성된 지역아동안전위원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⁴⁾가 해당 아동, 가족 등 주변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 미국

연방국가인 미국의 청소년 성매매와 성 착취에 대한 법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당사자는 범죄자가 아닌 범죄와 아동 성학대의 피해자이며, 따라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⁵⁾ 2010년 이후 뉴욕,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청소년 성매매 대상 아동을 피해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성매매를 이유로 체포된 청소년은 성 착취의 피해자로 우선 추정해야 하며, 국가와 주는 그들에게 맞는 보호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는 대체로 동일하다.⁶⁾ 이 법에 의해 성 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은 보호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계속해 성매매를 하였거나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경우 외에는 처분되거나 처벌받지 않고 사법/소년사법 절차가 아닌 아동보호 절차를 거쳐 상담, 의료, 주거 지원 등 학대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과 보호를 받는다.

4) 위원회의 설치 근거: 2004년 개정된 아동법 제13조. 이들의 설치 목적과 업무 내용은 동법 제14조와 해당 조항에 의해 마련된 지역아동안전위원회 규정(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 Regulations 2006)에 명시됨. 지역아동안전위원회는 아동서비스국 소속 사회복지사, 학교, 보건의료관계자, 경찰, 13세-19세 청소년 지원시설(정부 지원금 운영)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며, 아동 복지와 안전 관련 정책, 개발, 교육, 사례조사 등을 담당함.

5) 연방법인 2000년 매매와 폭력 피해자 보호법 (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of 2000)은 성매매 청소년을 성 학대 피해자로 인식함.

6) Polaris Project, 2008, Overview of State Legislative Police to Address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 State “Safe Harbor” Laws.

현재 코네티컷, 테네시, 텍사스, 워싱턴, 뉴욕, 버몬트,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미네소타 등 10여개의 주에서 착취당한 아동을 위한 면책법(Safe harbor law)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법을 제정, 시행 중이다.

특히 일리노이 주에서는 성매매 청소년을 처벌, 교화하기보다는 그들을 구출하고 보호하는데 초점을 둔 아동안전법 (Safe Children Act)를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청소년 성매매(juvenile prostitute)’ 라는 용어를 형법에서 삭제, 청소년의 자기 판단에 의한 자발적 성매매는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해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범죄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추가적인 구금은 또 다른 트라우마를 불러올 수 있고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큰 해가 되므로, 그들을 범죄자로 인식해 형사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아닌, 포주로부터의 협박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주된 내용이다. 피해 청소년의 보호에 대해서는 성매매 청소년을 가정법원의 보호를 받아야 할 착취 피해 아동으로 인식한 뉴욕 주의 착취 아동을 위한 면책법 (Safe Harbor for Exploited Children Act)를 참고할 만 하다.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아동을 소년사범들을 위한 보호 시설에서 조사받도록 한다면 이들이 성 착취 과정에서 경험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없으므로 이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이 이야기되었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법에는 그들이 성 착취와 학대로부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지역 기반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3. 뉴질랜드

2000년대 초반까지 뉴질랜드에서는 경범죄처벌법(Summary Offences Act 1981)에 의해 성매매 등 호객행위를 하는 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 처벌되었다. 하지만 2003년, 성매매개정법(Prostitution Reform Act 2003)이 제정되면서 청소년 성매매 당사자를 대상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에서 청소년

성매매를 주선하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과 청소년 성 매수자를 더욱 처벌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 법의 제정과 함께 경범죄처벌법 제26조는 폐지되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18세 미만의 미성년은 처벌받거나 처분되지 않으며, 그보다는 범죄⁷⁾에 대한 피해자로 간주된다. 성매매개정법 제23조 제3항은 청소년 성매매 당사자를 보호하려는 이러한 입법의도를 강조하며 “18세 미만의 경우 이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음”을 명시했는데, 이 때,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성매매에 ‘이용(used)’되었다고 표현해 청소년 성매매가 착취와 이용이라는 점과 그 불법성을 강조하였다.⁸⁾

이처럼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영국, 미국, 뉴질랜드에서는 공통적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심각한 성 착취 및 학대의 문제로 접근, 성매매 청소년들을 피해자로 인식해 지원하고 있다. 발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또한 성매매 청소년을 처벌하기보다는 그들을 피해자로 보고, 처벌이 아닌 보호와 구제를 통해 그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미비로 인해 피해자들은 처벌을 두려워하여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쉽게 신고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청소년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를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7) 성매매개정법 제20조~제22조는 18세 미만 미성년과의 성매매를 주선한 자와 이로부터 이익을 취한 자, 미성년 성매수자를 처벌하는 조항임.

8) Ministry of Justice, 2008. Report of the Prostitution Law Review Committee on the Operation of the Prostitution Reform Act 2003.

토론 6

토론문*

김란희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푸른꿈터 소장)

1. 청소년 성매매의 낙인 ‘대상·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조 목적에는 (중략)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중략)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되면서 선도보호의 대상으로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A(16세)는 스마트폰 어플 채팅을 통해 만난 성 매수자와 유사성행위를 했는데 성 매수자가 갑자기 성교를 요구하였고 B가 거부하자 폭력을 행사하면서 알몸 사진을 찍어 공개하겠다고 협박 하였다. 실랑이를 하다 매수자가 잠든 틈을 타 속옷만 입고 편의점으로 도망쳐 112에 신고하였다. 조사과정 중 B가 채팅 중에 21세라고 나이를 속였고 유사성행위가 끝난 후 16세라고 밝혀 피심을 받게 되었다.

B(17세)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약간의 용돈과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건만남을 시작했다. 큰돈을 만지다 보니, 그만두지 못하고 1년간 조건만남을 하다 그만두었다. 이후 쉼터에 입소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성 매수자 2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률 위반으로, 다른 매수자 3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 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 이 글은 2015.3.23일 개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토론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상아동청소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발표한 발제문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대안 마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를 참고로 재구성한 글입니다.

A는 16세라고 말한 시점이 유사성행위가 끝난 이후여서 성매매알선처벌법으로 피심을 받게 되었고, B 역시 성 매수자 3인이 청소년인줄 몰랐기에 매수자들이 성매매알선처벌법으로 처벌받았다. 이 사례를 통해 청소년 성매매를 바라보는 사회 전반과 사법기관의 인식과 태도를 가늠할 수 있다.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에서 이미 범죄를 실행한 혹은 실행할 의사가 있는 성매수자가 범죄의 대상(피해자)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청소년으로 할 것인지 성인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사이버 성매매가 1:1의 만남으로 인식되면서 성 매수된 아동·청소년은 ‘문제아’라는 낙인과 함께 성매매 유발자로 분류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 1항은 대상아동·청소년의 재활과 보호를 위해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제38조 2항에서는 소년법²⁾ 상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면서 대상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닌 선도보호가 필요한 문제아인 것이다.

이 법의 제정취지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현행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선도보호의 대상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성착취의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2)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청소년 성매매피해 지원 정책

현재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통합체계가 아닌 청소년복지 내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아동·청소년성보호, 성매매방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성매매 노출된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위치가 각각의 정책 내에 포함될 수 있지만 청소년 성매매가 몇몇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를 인식한다면 정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 성매매 청소년을 단일 범주로 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름 불리는 성매매 청소년

(1)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내 청소년 성매매

(Community Youth Safety-Net)

CYS-Net은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관련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각 기관의 활동을 상호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으로 가출, 학업 중단 및 실업, 폭력·성매매·약물오남용 등의 비행 및 범죄, 불안·우울 등 심리적 장애, 자살 등을 위험이 높은 청소년으로 보면서 지역사회 내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여 통합적 지원을 해주는 체계이다.

2015년 CYS-Net의 허브기관인 209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지만 모든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매매 청소년 조기발견과 십대 여성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학교밖 청소년 지원 정책 내 성매매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 5. 29 시행되면서 전국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90여 개소가 학업중단 청소년 및 미취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 청소년 역시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정책의 지원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지만 성매매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지원시스템에 편입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 성매매의 80% 이상이 사이버 성매매이며, 가출팜 형성을 통한 조직적 성매매 증가, 재학생의 성매매 노출, 성매매가 성인기까지 지속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으로는 청소년 성매매를 포괄할 수 없다. 청소년 성매매 예방에서 조기차단과 발견을 위한 아웃리치, 온-오프라인 상담과 아웃리치, 성매매 전문 상담과 의료지원 등 일차적 접근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청소년

2006년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은 아청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의해 청소년성장캠프에 참여하여 40시간 교육을 받는다. 현재 청소년성장캠프의 교육대상은 검찰에서 대상청소년 교육상담과정이수결정이 된 청소년, 경찰에서 대상청소년 발견사실이 통보된 청소년, 성매매로 법원에서 수강명령이 병과된 청소년, 청소년지원시설, 대안학교 등에서 추천한 성매매피해 청소년, 사이버도매상담을 통해 연계된 성매매피해 노출 청소년이다. 교육 수수료 후 1년간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체계에서의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알선처벌법) 제5조에 청소년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피해자보호법)은 예방교육, 지원시설, 상담소, 자활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지원시설 중 청소년지원시설이 분리되어 있다.

2013년부터 여성가족부는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사이버도매상담³⁾, 청소년 밀집지역 아웃리치 등을 통한 긴급지원을 상담소 업무로 편성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제2조 7호에서 피해자가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성적 착취이며 학대 행위인지를 모호하게 하면서 성 매수된 아동·청소년의 지원과 보호체계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성범죄의 피해자로 명시하는 것은 성 매수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된다는 의미이다.

3. 성매매 청소년의 다양화에 따른 조기발견, 보호지원, 자활대책 등 전문적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103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처벌 조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관련 정책은 청소년 보호 업무가 아니라 성매매정책 업무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 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 등의 대상에도 포함되어 산발적으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이 효과적으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통합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성에 따라

(1) 피해자 조기 발견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온·오프라인 상담 및 아웃리치 활동

3) 성매매피해청소년 교육을 수료한 청소년상담원이 직접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 가출, 조건 만남 등으로 채팅방을 개설한 청소년과 대화상담(2013 아동·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373)

- (2) 심터의 규칙과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필요에 따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전문화된 24시간 드랍인 센터
- (3) 성매매 전문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
- (4) 생계와 독립을 위한 자활지원
- (5) 성인 및 청소년 대상 성매매예방교육
- (6) 실태조사 등을 전문 인력이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이어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적 착취이며 인신매매’이라는 인식 전환

여성가족부가 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에 따르면, 실제로 성매매알선·강요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2007년 16세에서 2012년 15.5세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 사이에서 성매매가 성문화 중 하나이며, 남성 중심의 성문화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젊은 여성의 성(sexuality)은 왜곡된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성을 사는 남성의 연령대는 제한이 없지만 성을 파는 여성의 연령대는 상한선이 존재한다. 과열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성을 파는 여성의 나이가 낮아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모든 성매매가 그러하듯 청소년 성매매 역시 어린 여성들의 성을 사고 팔수 있는(알선) 구조와 문화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청소년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알선과 수요의 증가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모집·유인하면서 폭력과 착취의 구조에 놓이게 한다.

국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조에서 명시한 것처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이고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이 성적 착취의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국가 책임으로 명시해야 한다.



십대여성인권센터

Stand Up Against Sex-Trafficking of Minors

수탁사업 및 기관

사이버포래상담사업 /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십대/여성/인터넷의 성매매 피해지원을 비롯한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 단체로서 사이버포래상담사업과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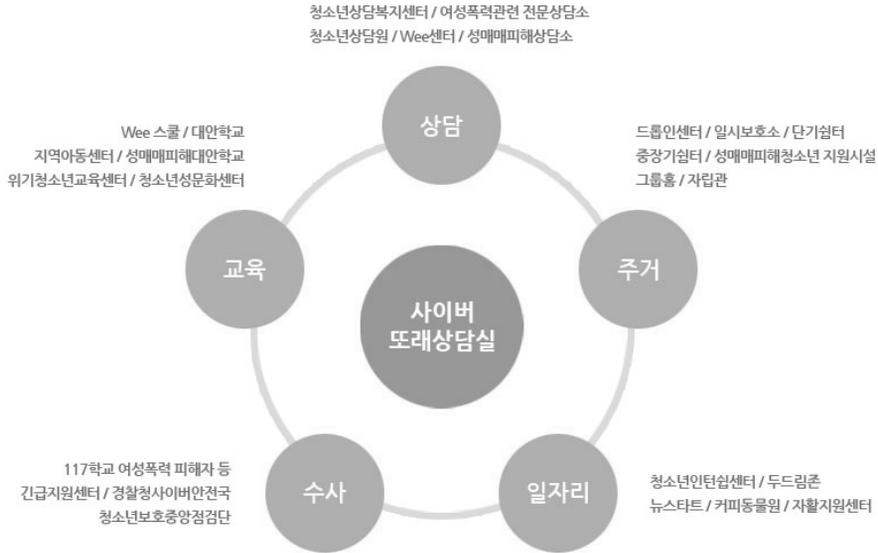
- 십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피해 지원을 비롯한 성인권 향상에 기여
- 청소년/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과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 사이버포래상담원 양성과 지속교육
- 청소년/인터넷성매매 관련 이슈생산 및 연대활동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아시아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연대

- 운영위원회 및 감사 : 11명 (명부 첨부)
- 전문위원 : 5명 (명부 첨부)
- 법률·의료·심리지원단 : 41명 (명부 첨부)

사이버포래상담 사업

- 사이버포래상담원 발굴 및 양성 : 십대를 위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 신규상담원 양성
 - 지속교육: 독서토론회, 강사초청교육, 특별교육, 문화활동, 외부토론회 등.
- 청소년/인터넷 성매매피해 예방과 적극적인 조기개입
 - 청소년/인터넷 성매매피해 지원네트워크 구축
 - 성매매 알선, 구매자 경계와 신고
 -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활발한 홍보활동
 - 청소년/성매매 관련이슈 생산

○ 대외추진체계



○ 사업내용

1	상담&모니터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채팅 상담 및 모니터링 • 어플리케이션 상담 및 모니터링 • 카카오톡 상담 및 전화상담
2	통합지원서비스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 : 전국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청소년성장캠프’ • 주거지원 : 드롭인센터, 일시보호소, 쉼터, 그룹홈 • 의료지원 : 십대여성인권센터 의료지원단 • 심리지원 : 십대여성인권센터 심리지원단 • 학업지원 : 검정고시 및 대안학교 • 일자리지원 : 인턴쉽센터, 자활지원센터 등 • 법률지원 : 117학교 · 여성폭력 피해자 등 긴급지원센터, 경찰청사이버안전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등
3	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원 양성교육 및 인턴쉽 • 상담원 지속교육 (월 1회 내부토론 진행) • 성매매예방교육 및 활동가 교육 • 상담원 글로벌 리더십 개발교육
4	홍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청소년을 위한 웹전단, 배너제작 및 배포 • 홈페이지/페이스북 운영 • 오프라인 아웃리치 : 거리 청소년 및 청소년이용업소대상 • 토론회개최 : 청소년/성매매 관련이슈
5	네트워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방문 • 관련기관 MOU체결 • 사안별 연대활동 • 국제연대
6	신고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구매자, 알선업자, 알선사이트 신고활동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장기간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재의미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춤형 사전사후관리(법률, 의료, 주거, 일자리 지원 등)를 통해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성매매 재유입을 예방하여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사업내용

- 40시간 기본교육 프로그램 ‘청소년성장캠프’ 운영
 - 심리진단, 자아존중감, 사회통합, 성주체성, 탈성매매, 치유 및 치료 프로그램, 관계형성(여가활동) 프로그램 등
- 20시간 심화교육 프로그램 ‘청소년성장캠프’ 운영
 - 기본과정에서 성취한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구축하면서 구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인권교육, 직업/취업교육(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경제교육, 명사초청강연, 집단상담프로그램, 걷기대회 등)
- 사전사후지원
 - 가족에 대한 개입 : 가정복귀 시 가족갈등, 부모의 양육태도 등 개입
 - 심리·정서적 지원 : 다양한 폭력피해경험으로 인한 문제 개입
 - 법률지원 및 재판동행
 - 자립지원 : 두드림존 및 자활지원프로그램 연계 및 쉼터 이용자 프로그램 연계, 지적능력이 취약한 경우, 대인관계 및 사회기술훈련 지원
 - 진학 및 진로지도 : 학교부적응 상담 및 검정고시 지원 등
 - 기타 : 보호관찰 및 보호처분 대상자 지원, 교육이수자 대상 사후지지모임, 대상 청소년에 대한 각종 경조사 선물 지원

운영위원 및 감사 운영위원장 : 장민혜

1	장민혜	운영위원장 / 기획홍보전문가, 인디엔피 실장
2	김동심	표현예술치료 전문가, 전 두레방 실무자
3	김선옥	청소년성매매 전문가, 새날을여는 청소년쉼터 대표
4	김주경	의료지원단장 / 산부인과 의사
5	박숙란	서기 / 평택지원 국선변호사, 전 다시함께센터 상근변호사
6	서순성	법률지원단장 / 변호사, 법무법인 (유)원
7	양지용	기획홍보전문가, 인디엔피 대표
8	차미정	심리지원단장 / 명지대학교 표현예술치료학과 교수
9	조순실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 대표
10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11	안수경	감사 / 강남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전문위원

1	김미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2	박혜란	여성학자
3	임소정	영국거주, 연구원
4	쥬드리	그린피스 활동가
5	이상돈	동양공전 기계공학부 겸임 교수

법률지원단 (변호사) 단장 : 서순성

1	김병희	법률사무소 소도
2	김성진	법무법인(유)원소속 (사)선
3	김차연	재단법인 동천
4	김택선	대한주택보증
5	박숙란	평택지원 국선
6	서순성	법무법인(유)원
7	이영임	김&이 사무소
8	정정훈	정정훈 사무소
9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10	천지선	법률사무소 지선
11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12	배진수	사회복지공익법센터
13	최석봉	법무법인 울려
14	배수진	천지인 합동법률사무소
15	서경원	법무법인 콤파스

의료지원단 (의사) 단장 : 김주경

1	김주경	무지개연합의원	산부인과
2	김충기	의료윤리연구회	내과
3	변형규	안산무지개연합의원	가정의학과
4	서대원	서내과의원	내과
5	안상준	대한의사협회정책이사	신경과
6	이승필	의정부무지개연합의원	가정의학과
7	이학승	고정선 신경정신과의원	정신과
8	장진호	장진호 내과의원	내과
9	지구덕	한서중앙병원	신경정신과
10	한희종	나눔정신과	정신과
11	김숙희	김숙희 산부인과	산부인과
12	박진희	김숙희 산부인과	산부인과

심리지원단 단장 : 차미정

1	김동심	예술심리치료사
2	김선영	예술심리상담사
3	남일량	서울시 아동생활 공동가정지원센터
4	박이정화	마임이스트
5	박재나	예술심리치료사
6	서은미	해와나무 아동청소년발달센터
7	심언희	목동 행복한 아동 청소년심리치료센터
8	오정윤	학교폭력상담사, 예술심리치료사
9	오희경	수 아동가족 심리치료연구소
10	조향미	도화청소년문화의집
11	차미정	명지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 교수
12	최선화	임상심리사
13	현연경	오산아동발달센터
14	안수경	가족치료사



청소년 성매매문제, 같이 얘기 좀 해 봅시다!
대상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교육인가? 처벌인가?



십대여성인권센터
Stand Up Against Sex-Trafficking of Minors

전화 02-6348-1318 | 010-3232-1318 홈페이지 www.10up.or.kr 이메일 10up@hanmail.net

주소 (07220)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38길 9-1 은혜빌딩 6층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2-181979 | 예금주 십대여성인권센터